

PRACTICAL GUIDE

EU PPWR 수출기업 실무 FAQ 30

적용·시험·기술문서·EPR 실무 대응 안내

Regulation (EU) 2025/40
2026년 8월 11일 기준



이 자료집을 읽기 전에

본 자료집은 전남광주수출 e 음 'EU PPWR 대응 및 안내' 게시판에 게시한 FAQ 30 개를 수출기업의 실무 활용 목적에 따라 6 개 주제로 재분류하고 한 권으로 편집한 참고자료입니다. Regulation (EU) 2025/40(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PPWR)의 적용범위와 단계별 준비사항을 업무 흐름에 맞춰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자료집 활용방법

게시판에 게시한 FAQ 01~30 의 원래 번호는 검색과 대조가 가능하도록 유지했습니다. 자료집에서는 번호순이 아니라 6 개 PART 의 실무 흐름에 따라 본문을 재배치했으므로, 목차에서 주제 또는 FAQ 번호로 필요한 내용을 찾으십시오.

질문을 찾은 뒤 '핵심 답변'으로 결론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지는 세부 설명과 관련 규정·공식 가이드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각 FAQ 의 기준일은 원문 작성일을 따르며, 자료집 편집기준일은 2026 년 8 월 11 일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최신 EU 법령·위임법령·시행법령과 판매국 행정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TD 는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DoC 는 EU 적합성선언서(EU Declaration of Conformity), EPR 은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을 의미합니다.

자료집 구성

구분	주제	수록 FAQ
PART 1	적용범위·시행일정·대응착수	FAQ 01~02, 17
PART 2	적합성평가·기술문서(TD)·적합성선언서(DoC)	FAQ 03~06, 30, 16
PART 3	포장구조·구성요소·유해물질	FAQ 07, 14, 25, 08~10
PART 4	SKU·공급망·시험증빙 관리	FAQ 12~13, 11, 15, 26~28
PART 5	판매국 EPR·포장 표시	FAQ 18, 23~24
PART 6	중장기 설계요건·전환관리	FAQ 19~22, 29

법적 책임에 관한 중요 유의사항

아래 사항은 본 자료집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기업의 실제 수출·계약·시험·표시 의사결정은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1. 일반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자료집은 PPWR 대응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특정 기업, 제품, 포장 또는 거래구조에 대한 법률의견, 규제기관의 유권해석, 인증서나 적합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 적합성 보증이 아닙니다

자료집에 소개된 시험성적서, 공급업체 확인서, TD 또는 DoC 예시는 적합성 입증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을 설명한 것입니다. 특정 성적서 한 건이나 공급업체 문서만으로 최종 포장 전체의 PPWR 적합성이 자동 보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의무는 포장의 기능·재질·충구조·식품접촉 여부, 제조자·수입자·생산자 역할, EU 시장 출시시점, 판매 회원국, 온라인 직판 여부와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최신 법령과 회원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PPWR의 위임법령·시행법령·공식 가이드와 회원국별 EPR 등록·보고·표시 절차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집의 기준일 이후 변경사항은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5. 공식 법령과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본 자료와 EU 법령 원문 또는 권한 있는 감독기관의 결정이 다를 경우 공식 법령과 해당 결정이 우선합니다. EU 법률의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해석 권한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있습니다.

6. 기업의 확인·기록 책임

기업은 실제 수출포장과 시험시료의 동일성·대표성, 공급업체·품번·재질·중량·두께·인쇄·접착제·코팅 변경 여부, 문서의 유효성 및 EU 수입자와의 역할분담을 직접 확인하고 그 근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7.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위험 또는 경계사례, 시장 출시시점 분쟁, 계약상 책임배분, 회원국별 EPR, 표시·광고 문구, 부적합·리콜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EU 법률전문가, 공인 시험기관, 해당 회원국의 권한 있는 기관 또는 EU 수입자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책임 제한

본 센터와 편집자는 관련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을 제외하고, 본 자료만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이나 최신 정보 미확인으로 발생한 직접·간접 손실에 대해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권장 확인 순서

- ① 최신 PPWR 원문 및 후속 법령 → ② EU 집행위원회 공식 가이드·FAQ → ③ 판매국별 EPR·표시 절차 →
- ④ 실제 포장사양과 공급망 증빙 → ⑤ 필요 시 법률·시험 전문가 확인

목차

PART 1~3

PART 1 적용범위·시행일정·대응착수	6
FAQ 01 우리 회사와 포장도 PPWR 적용 대상인가요?	7
FAQ 02 PPWR 은 언제부터 적용되며, 2026 년 8 월 12 일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5
FAQ 17 PPWR 대응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22
PART 2 적합성평가·기술문서(TD)·적합성선언서(DoC)	26
FAQ 03 기술문서(TD)와 EU 적합성선언서(DoC)는 무엇이 다르며 어떻게 준비하나요?	27
FAQ 04 TD 와 DoC 는 누가 작성하고 최종 책임을 지나요?	30
FAQ 05 TD 와 DoC 의 공식 양식은 있나요?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33
FAQ 06 시험성적서만으로 TD 와 DoC 를 작성할 수 있나요?	36
FAQ 30 TD·DoC 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빈칸, N/A, '미정' 중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39
FAQ 16 TD·DoC 는 어떤 언어로 작성하고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42
PART 3 포장구조·구성요소·유해물질	45
FAQ 07 복합재 파우치는 어떤 자료와 시험성적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46
FAQ 14 병의 캡·라벨·잉크·접착제도 별도 자료가 필요한가요?	49
FAQ 25 실리카겔·산소흡수제·제습제도 포장 구성요소인가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52
FAQ 08 4 대 중금속 기준은 어느 포장재에 적용되나요?	55
FAQ 09 식품접촉 포장의 PFAS 제한기준과 적용범위는 무엇인가요?	58
FAQ 10 총불소 50 mg/kg 미만 시험결과로 PFAS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나요?	61

목차

PART 4~6

PART 4 SKU·공급망·시험증빙 관리	64
FAQ 12 여러 SKU 를 하나의 TD·DoC 로 묶어 작성할 수 있나요?	65
FAQ 13 바코드·포장재 중량·치수는 어떤 포장단위와 단위로 작성하나요?	68
FAQ 11 포장재 공급업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나요? 제조사가 다시 시험해야 하나요?	71
FAQ 15 공급업체가 도면과 배합정보를 영업비밀로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74
FAQ 26 국내 KOLAS 또는 ISO/IEC 17025 시험기관의 성적서는 EU 에서 인정되나요?	77
FAQ 27 시험성적서에 유효기간이 없으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고 언제 재시험해야 하나요?	80
FAQ 28 식품접촉 적합성 자료와 PPWR 시험자료는 무엇이 다르며 둘 다 필요한가요?	83
PART 5 판매국 EPR·포장 표시	86
FAQ 18 독일 LUCID 등 판매국별 EPR 등록은 TD·DoC 와 별개인가요?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87
FAQ 23 PPWR 포장 표시·재질표시·분리배출 정보와 QR 코드는 언제부터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92
FAQ 24 기존 한글 포장 위에 독문·현지어 스티커 라벨을 추가 부착해도 되나요?	95
PART 6 중장기 설계요건·전환관리	98
FAQ 19 2030 년 이후 적용되는 재활용등급·재생원료·빈공간 항목을 지금 TD·DoC 에 작성해야 하나요?	99
FAQ 20 포장재 재활용성 등급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102
FAQ 21 플라스틱 포장의 재생원료 함량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증빙을 확보해야 하나요?	105
FAQ 22 포장 최소화와 빈공간 비율 기준은 어떤 포장에 적용되고 어떻게 측정하나요?	108
FAQ 29 EU 적용일 전에 제조·선적했거나 운송 중인 포장제품은 계속 판매할 수 있나요?	111

PART 1

적용범위·시행일정·대응착수

PPWR 적용대상과 시행일정을 확인하고, 기업이 대응을 시작할 때 먼저 준비해야 할 자료와 업무 순서를 정리합니다.

FAQ 01 우리 회사와 포장도 PPWR 적용 대상인가요?

FAQ 02 PPWR 은 언제부터 적용되며, 2026 년 8 월 12 일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FAQ 17 PPWR 대응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FAQ 01

우리 회사와 포장도 PPWR 적용 대상인가요?

2026 년 8 월 4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한국에서 식품을 제조해 EU 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사용하는 파우치, 병, 트레이, 라벨, 외박스도 모두 PPWR 적용 대상인가요? 포장재 공급업체가 아닌 식품 제조사도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네.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은 재질이나 원산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PPWR 적용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식품을 포장해 EU 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제품과 함께 EU 시장에 들어가는 판매포장, 묶음포장, 운송포장 및 그 구성품을 검토해야 합니다.

PPWR 은 단순히 빈 포장재를 생산하는 업체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EU 집행위원회 가이드에 따르면 판매포장과 묶음포장의 '제조자'는 일반적으로 공급받은 포장재를 최종 가공·충전·밀봉하고 제품을 넣어 EU 시장에 출시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자사 제품을 자사 상표로 포장해 EU 에 수출하는 식품기업은 포장재 공급업체의 자료를 받아 최종 포장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기술문서(TD)와 EU 적합성선언서(DoC)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PPWR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이 모든 포장에 모든 세부 의무가 같은 시점과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식품접촉 여부, 재질, 포장단계, 일회용·재사용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요건과 시행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 PPWR 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PPWR 제 2 조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PPWR 제 2 조 제 1 항

재질과 관계없이 모든 포장과 모든 포장폐기물에 적용되며, 산업·제조·소매·유통·사무실·서비스업 또는 가정에서 사용되거나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종이, 유리, 금속 또는 바이오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이유
-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이유
- 한국에서 제조된 뒤 완제품 상태로 EU 에 수입된다는 이유

- 포장재를 외부 공급업체에서 구매했다는 이유
- 중량이나 크기가 작다는 이유

PPWR 은 EU 에서 생산된 포장과 수입 포장을 동일한 기본 틀에서 다룹니다. EU 밖에서 제조된 포장제품도 EU 시장에 출시된다면 PPWR 을 검토해야 합니다.

2. 무엇을 '포장'으로 보나요?

PPWR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는 포장을 재질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제품을 담고, 보호하고, 취급하고, 인도하거나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정의합니다.

판단할 때는 단순히 물건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질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제품을 담거나 보호하거나 운반·전달·표시하는 기능이 있는가?
2. 제품 자체의 본질적·기능적 일부인가, 아니면 포장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물품인가?
3. 제품과 함께 사용·소비·폐기되도록 의도되었는가?
4. 본체에 통합된 구성품 또는 제품에 부착된 보조요소인가?
5. 판매 시점에 충전되는 컵·용기 등 서비스포장에 해당하는가?

EU 집행위원회 이행 가이드는 부속서 I 의 예시 목록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해당 물품이 제 3 조의 포장 정의를 실제로 충족하는지 기능과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3. 식품 수출기업이 확인해야 할 포장단계

PPWR 은 포장을 기능에 따라 판매포장, 묶음포장 및 운송포장으로 구분합니다. 기존에 흔히 사용하던 1 차·2 차·3 차 포장과 대체로 대응합니다.

① 판매포장(Sales packaging, 1 차 포장)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하나의 판매단위를 이루는 포장입니다.

식품 수출 사례:

- 김·스낵·건나물 등의 개별 파우치
- 소스·음료의 PET 병 또는 유리병
- 병의 캡과 마개
- 도시락김 트레이와 겔봉 필름

- 캔, 컵, 용기, 뚜껑
- 제품에 부착된 점착식 라벨
- 차-커피 등과 함께 사용·폐기되는 투과성 티백·커피백

② 묶음포장(Grouped packaging, 2 차 포장)

여러 판매단위를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하는 포장입니다. 묶음 자체가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진열·재고·유통을 편리하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식품 수출 사례:

- 여러 날개 제품을 묶는 번들 필름
- 5g 개별 김 20 개를 묶는 외포장
- 여러 병이나 캔을 한 단위로 묶는 종이 슬리브 또는 수축필름
- 소매용 멀티팩 상자

③ 운송포장(Transport packaging, 3 차 포장)

판매단위 또는 묶음단위의 취급과 운송을 쉽게 하고 운송 중 손상을 방지하는 포장입니다. 도로·철도·선박·항공 화물 컨테이너 자체는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식품 수출 사례:

- 골판지 외박스
- 완충재와 칸막이
- 박스 밀봉 테이프
- 팔레트, 스트레치필름 및 결속재

기술문서를 준비할 때는 1 차 포장만 적고 끝내지 말고, 실제 EU 시장에 공급되는 전체 포장사양을 단계별로 목록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작은 구성품도 포장에 포함되나요?

포장 본체에 통합되거나 부착되어 포장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품과 보조요소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에 부착되어 병과 함께 폐기되는 점착식 라벨은 PPWR 부속서 I 에서 포장에 해당하는 사례로 제시됩니다. 파우치의 지퍼, 병의 캡, 트레이의 뚜껑 등도 최종 포장단위를 구성합니다.

잉크·바니시·접착제는 그 자체를 별도의 포장 품목으로 분류하는 문제와 별개로, 포장에 적용되어 최종 포장의 구성과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문서 작성 시에는 원단이나 용기 본체뿐 아니라 다음 항목까지 공급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인쇄잉크

- 바니시와 코팅
- 합지·라미네이션 접착제
- 라벨 접착제
- 실링재와 밀봉재

특히 중금속과 식품접촉 포장의 PFAS 적합성을 평가할 때에는 관련 잉크·코팅·접착제를 포함한 포장 구성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5. 포장처럼 보여도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물건의 모양이 용기나 필름이라고 해서 항상 포장인 것은 아닙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포장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빈 상태로 별도 구매하는 컵이나 보관용기
- 제품 생산공정의 기술적 기능만 수행하고 판매·인도 단계의 포장 기능을 하지 않는 공정용 필름
- 제품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체형 부품으로서 포장을 열어 내용물을 꺼내는 관계가 아닌 물품

반면 같은 컵이라도 판매점에서 음료를 담아 제공하면 서비스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형태의 물품도 공급 방식과 의도된 용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품 카탈로그, 실제 사용과 폐기 방식, 공급계약, 사진 및 사양서를 근거로 판단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한국 식품 제조사와 포장재 공급업체 중 누가 책임지나요?

여기에서는 '제조자(manufacturer)'와 '생산자(producer)'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용어는 PPWR 에서 서로 다른 책임을 설명합니다.

제조자(Manufacturer)

포장의 지속가능성·표시 요건 적합성을 확인하고 TD 와 DoC 를 준비하는 주체입니다.

EU 집행위원회 가이드에 따르면 판매포장과 묶음포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업자가 제조자가 됩니다.

- 공급업체로부터 포장재를 공급받고
- 절단·충전·밀봉 등 최종 가공을 하며
- 제품을 넣은 포장 또는 포장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사업자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포장제품을 설계·제조하도록 한 브랜드 소유자도 제조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식품기업이 자사 상표 제품을 파우치나 병에 충전·밀봉해 EU 에 수출한다면, 포장재 공급업체의 자료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출 포장의 최종 적합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생산자(Producer)

PPWR 에서 생산자는 특정 회원국에서 포장 또는 포장제품을 처음 제공하여 그 국가에서 포장폐기물이 발생하도록 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주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등록·보고·비용 부담과 관련됩니다.

제조자와 생산자가 항상 같은 사업자인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유통경로, 판매 회원국, 수입사 및 온라인 직판 여부에 따라 생산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자(Importer)

EU 에 설립되어 제 3 국에서 온 포장 또는 포장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사업자입니다. 수입자는 제조자의 적합성평가와 TD 작성 여부, 필요한 표시와 문서가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EU 수입사와 계약할 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PPWR 상 제조자·수입자·생산자 역할
- TD 와 DoC 작성·검토·보관 주체
- 공급업체 자료와 시험성적서 제공 책임
- 회원국별 EPR 등록과 보고 책임
- 규격 변경 또는 부적합 발생 시 통지 절차

7. PPWR 만 충족하면 식품 포장 규제 대응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PPWR 제 2 조 제 2 항은 포장된 제품의 안전·품질·건강보호·위생 등에 관한 다른 EU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식품접촉 포장은 PPWR 과 함께 다음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 Regulation (EC) No 1935/2004: 식품접촉재료의 일반 안전요건과 추적성
- Regulation (EC) No 2023/2006: 식품접촉재료의 우수제조관리기준(GMP)
- Regulation (EU) No 10/2011: 플라스틱 식품접촉재료의 조성·이행·공급망 DoC 요건

따라서 PPWR 상 중금속·PFAS 또는 재활용성 요건을 검토했다고 해서 식품으로의 물질 이행, 사용 가능한 원재료, 접촉시간·온도 및 식품유형에 관한 식품접촉 적합성 확인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8. 모든 포장에 같은 시험과 같은 의무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적용범위와 개별 의무의 적용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4 대 중금속 합계 기준: 포장과 포장 구성품 전반에 적용
- PPWR 제 5 조 제 5 항의 PFAS 제한: 식품접촉 포장에 적용

- 플라스틱 재생원료 최소함량: 특정 플라스틱 포장에 단계적으로 적용
- 재사용 목표: 규정에서 정한 포장유형과 사업자에 적용
- 조화된 분리배출 라벨: 시행법 제정과 항목별 적용시점에 따라 적용

따라서 “외박스도 PPWR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대상이다’가 답이지만, “외박스에 식품접촉 포장용 PFAS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9. 우리 회사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점검표

다음 중 하나라도 '예'라면 PPWR 대응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EU 에 포장된 제품을 수출한다.
- [] 자사 이름이나 상표가 포장제품에 표시된다.
- [] 파우치·병·캔·트레이에 식품을 직접 충전하거나 밀봉한다.
- [] 날개 제품을 묶음포장 또는 외박스에 넣어 공급한다.
- [] EU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포장제품을 직접 판매한다.
- [] EU 내 여러 회원국에 제품을 유통한다.
- [] 포장재의 재질·구조·규격을 자사가 결정하거나 변경한다.
- [] EU 수입사가 TD·DoC 또는 시험성적서를 요청했다.

10. 적용 대상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EU 수출 SKU 와 실제 수출 포장사양을 확정합니다.
2. 판매포장·묶음포장·운송포장을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3. 병, 캡, 라벨, 지퍼, 잉크, 접착제 등 구성품을 모두 목록화합니다.
4. 각 구성품의 공급업체, 품번, 재질, 두께, 중량 및 규격을 정리합니다.
5. 시험성적서, 공급업체 DoC, 사양서, BOM 및 도면을 수집합니다.
6. 한국 제조사, EU 수입사 및 회원국별 생산자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7. 적용되는 PPWR 요건과 식품접촉 규정을 구분해 문서 준비계획을 세웁니다.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Regulation (EU) 2025/40

- 제 2 조: PPWR 적용범위
-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포장의 정의
- 제 3 조 제 1 항 제 5~7 호: 판매포장·묶음포장·운송포장의 정의
- 제 3 조 제 1 항 제 13 호: 제조자의 정의
- 제 3 조 제 1 항 제 15 호: 생산자의 정의
- 제 3 조 제 1 항 제 17 호: 수입자의 정의
- 제 15 조: 제조자의 의무
- 제 16 조: 포장·포장재 공급업체의 정보제공 의무
- 제 18 조: 수입자의 의무
- 부속서 I: 포장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의 예시 목록

EU 집행위원회 공식 안내

- Commission Notice C/2026/3084: 포장, 제조자, 생산자 및 수입자 정의에 관한 PPWR 이행 가이드
- European Commission PPWR FAQ: 이해관계자의 반복 질문에 대한 최신 공식 설명

함께 검토할 식품접촉 규정

- Regulation (EC) No 1935/2004

- Regulation (EC) No 2023/2006
- Regulation (EU) No 10/2011

공식 자료 바로가기

-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 EU 집행위원회 PPWR 이행 가이드 C/2026/308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 EU 집행위원회 PPWR FAQ — 2026 년 8 월 3 일 갱신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 EU 집행위원회 포장폐기물 정책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 식품접촉재료 기본규정 (EC) No 1935/2004 (<https://eur-lex.europa.eu/eli/reg/2004/1935/oj/eng>)
- 플라스틱 식품접촉재료 규정 (EU) No 10/2011 (<https://eur-lex.europa.eu/eli/reg/2011/10/oj/eng>)
- 식품접촉재료 GMP 규정 (EC) No 2023/2006 (<https://eur-lex.europa.eu/eli/reg/2006/2023/oj/eng>)

FAQ 02

PPWR 은 언제부터 적용되며, 2026 년 8 월 12 일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026 년 8 월 4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 년 8 월 12 일이 되면 모든 의무가 한꺼번에 시작되는지, 전남광주 수출기업은 우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Regulation (EU) 2025/40 은 2025 년 2 월 11 일 발효되었으며, 원칙적으로 2026 년 8 월 12 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날짜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은 PPWR 의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PPWR 의 모든 세부 의무와 수치 목표가 2026 년 8 월 12 일에 동시에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 재활용성 등 일부 기본 원칙과 경제운영자의 적합성 관리 의무는 일반 적용일부터 검토해야 하지만, 재활용성 등급, 재생원료 함량, 포장 최소화, 빈 공간 비율, 조화된 라벨 등은 조항별로 2028 년, 2030 년, 2035 년 또는 후속 위임법령·시행법령의 채택시점과 연동됩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2026 년 8 월 12 일을 단순한 라벨 변경일로 이해하기보다, EU 에 출시하는 포장의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문서와 공급망 증빙을 갖추기 시작해야 하는 일반 적용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발효일과 적용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PPWR 의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 년 12 월 19 일: Regulation (EU) 2025/40 의 법령일자
- 2025 년 1 월 22 일: EU 관보에 Regulation (EU) 2025/40 공표
- 2025 년 2 월 11 일: 규정 발효
- 2026 년 8 월 12 일: 규정의 일반 적용 시작

발효는 PPWR 이 EU 법체계 안에서 유효한 법령이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적용은 기업과 회원국이 해당 조항에 따라 실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PPWR은 EU 규정(Regulation)이므로 지침(Directive)과 달리 원칙적으로 회원국의 별도 국내법 전환 없이 직접 적용됩니다. 다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록, 신고, 감독기관 운영과 같이 회원국별 행정체계가 개입되는 부분은 수출 대상국의 국내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2026년 8월 12일부터 모든 의무가 한꺼번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Regulation (EU) 2025/40 제 71 조는 규정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고 정하지만, 개별 조항에는 별도의 적용일, 유예기간 또는 후속 법령 채택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의무를 다음 세 그룹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 적용일부터 확인할 의무: 적용범위, 포장 내 물질 제한, 재활용 가능성의 기본 원칙, 경제운영자 의무, 적합성평가, 기술문서와 EU 적합성선언서
- 별도 날짜부터 적용되는 의무: 조화된 포장 라벨, 재활용성 성능등급, 재생 플라스틱 최소함량, 포장 최소화, 빈 공간 비율, 재사용 목표 등
- 후속 법령과 연동되는 의무: 시험방법, 계산방법, 라벨 규격, 재활용 설계기준 등 EU 집행위원회의 위임법령 또는 시행법령으로 구체화되는 사항

따라서 “PPWR 적용일은 2026년 8월 12일”이라는 문장만 보고 모든 포장에 동일한 시험, 라벨, 재생원료 목표가 즉시 적용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3. 2026년 8월 12일부터 우선 확인해야 할 핵심 의무

가. 포장과 포장 구성요소의 적용범위 확인

판매포장, 묶음포장, 운송포장뿐 아니라 캡, 마개, 라벨, 잉크, 접착제, 코팅, 테이프 등 최종 포장단위를 구성하는 요소를 빠짐없이 목록화해야 합니다.

제품 내용물이 같더라도 포장재질, 층구조, 공급업체, 규격, 인쇄 또는 접착제 사양이 다르면 별도의 포장유형으로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조자·수입자·공급업체의 역할 확인

PPWR 제 15 조에 따라 제조자는 적용 가능한 제 5 조부터 제 12 조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포장만 시장에 출시해야 하며, 출시 전에 적합성평가를 실시하고 부속서 VII 에 따른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PPWR 제 16 조에 따라 포장 또는 포장재 공급업체는 제조자가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EU 수입자 또는 거래처와 누가 제조자에 해당하는지, 누가 EU 적합성선언서를 발행하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전달할지를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기술문서(TD)와 EU 적합성선언서(DoC) 준비

PPWR 제 38 조는 제 5 조부터 제 12 조의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부속서 VII 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적합성이 입증되면 제 39 조와 부속서 VIII 의 구조에 따라 EU 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합니다.

2026 년 8 월 12 일 이전에 최소한 다음 자료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포장유형과 적용 SKU 목록
- 판매포장·묶음포장·운송포장 구성표
- 포장 구성요소별 재질, 등급, 두께, 중량, 치수, 공급업체와 품번
- 도면, 사양서, BOM, 잉크·접착제·코팅 정보
- 시험성적서와 공급업체 적합 확인자료
- 적용 PPWR 조항과 적합성 판단결과
- 기술문서 버전, EU 적합성선언서 번호와 서명권자

라. 4 대 중금속 제한 확인

PPWR 제 5 조 제 4 항에 따라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존재하는 납(Pb), 카드뮴(Cd), 수은(Hg), 6 가크롬(Cr VI)의 농도 합계는 원칙적으로 100 mg/kg 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1 차 포장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포장재, 캡, 라벨, 잉크, 접착제, 묶음포장과 운송포장 등 적용되는 포장 구성요소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 식품접촉 포장의 PFAS 제한 확인

PPWR 제 5 조 제 5 항은 2026 년 8 월 12 일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PFAS 를 함유한 식품접촉 포장의 EU 시장 출시를 제한합니다.

주요 기준은 개별 PFAS 25 ppb, 표적분석으로 측정한 PFAS 합계 250 ppb, 고분자 PFAS 를 포함한 PFAS 50 ppm 입니다. 시험결과를 사용할 때에는 시험시료가 실제 수출포장과 동일한 재질, 공급업체, 품번, 층구조, 잉크, 접착제와 코팅을 대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FAS 시험과 총불소 결과의 활용방법은 후속 FAQ 에서 별도로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바. 재활용 가능성의 기본 원칙 확인

PPWR 제 6 조 제 1 항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EU 집행위원회의 2026 년 이행 가이드는 이 기본 원칙이 2026 년 8 월 12 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재활용 설계기준과 A·B·C 성능등급에 따른 시장출시 제한은 원칙적으로 2030 년 또는 관련 위임법령 발효 후 정해진 기간 중 더 늦은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 년 단계에서는 포장구조와 재질조합을

파악하고 현재 사용 중인 포장의 일반적으로 분리·선별·재활용을 방해하는 구조인지 사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2026 년 8 월 12 일 이후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사항

다음은 대표적인 후속 일정입니다. 실제 적용일은 개별 조항의 “해당 날짜”와 “후속 법령 발효 후 일정” 중 더 늦은 날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포장 재질의 조화된 라벨: 원칙적으로 2028 년 8 월 12 일 또는 관련 시행법령 발효 후 24 개월 중 더 늦은 시점
- 재활용성 설계기준과 A-B-C 등급: 원칙적으로 2030 년 1 월 1 일 또는 관련 위임법령 발효 후 24 개월 중 더 늦은 시점
- 플라스틱 포장의 최소 재생원료 함량: 원칙적으로 2030 년 1 월 1 일 또는 관련 시행법령 발효 후 3 년 중 더 늦은 시점
- 포장 중량·부피 최소화: 2030 년 1 월 1 일부터
- 묶음포장·운송포장·전자상거래 포장의 최대 빈 공간 비율: 원칙적으로 2030 년 1 월 1 일 또는 계산방법 시행법령 발효 후 3 년 중 더 늦은 시점
- 대규모 재활용(Recycled at scale) 요건: 원칙적으로 2035 년부터 단계 적용

이 일정은 기업이 2028 년이나 2030 년까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포장설계 변경, 공급업체 전환, 시험, 고객 승인과 재고소진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현재 포장구조를 기준으로 중장기 개선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5. 생산일·선적일·EU 도착일 중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PPWR 적용 판단은 단순히 한국에서 포장을 생산한 날짜나 선적한 날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이 EU 시장에 최초로 제공되는 “시장 출시(placing on the market)” 시점과 거래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2026 년 8 월 12 일 이전에 생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EU 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의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정 라벨 의무처럼 별도의 재고소진 또는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전환규정을 적용합니다.
- 판매포장, 묶음포장, 식품접촉 포장과 운송포장은 포장·충전·밀봉 및 공급방식에 따라 시장 출시시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코텀즈나 소유권 이전일만으로 PPWR의 시장 출시시점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EU 수입자와 거래처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시점에 출하되는 제품은 주문서, 생산일, 충전·밀봉일, 선적일, 통관일, EU 고객 인도일과 재고보유 주체를 기록하고 EU 수입자와 적용기준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전남광주 수출기업의 우선 준비 순서

1. EU 수출 제품과 SKU를 확정합니다.
1. SKU별 판매포장, 묶음포장, 운송포장과 구성요소를 목록화합니다.
1. 각 포장유형의 제조자, 포장재 공급업체, 한국 수출자, EU 수입자와 판매자를 구분합니다.
1. 포장 구성요소별 사양서, BOM, 도면, 재질, 중량, 치수, 잉크·접착제·코팅 정보를 수집합니다.
1. 4대 중금속과 식품접촉 포장의 PFAS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공급업체 적합자료를 확보합니다.
1. 시험자료가 실제 수출포장과 동일한 공급업체, 품번, 재질과 구조를 대표하는지 매칭합니다.
1. 제5조부터 제12조 중 해당 포장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구분하고 적합성평가표를 작성합니다.
1. 부속서 VII에 따라 기술문서를 구성하고 부속서 VIII에 따라 EU 적합성선언서를 준비합니다.
1. EU 수입자와 문서 제공방식, 언어, 책임주체, 업데이트 절차를 합의합니다.
1. 2028년·2030년·2035년 단계별 의무에 대비한 포장개선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7. 2026년 8월 12일 전 자가점검표

- ☐ EU 수출 SKU와 실제 포장사양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 ☐ 판매포장·묶음포장·운송포장을 모두 구분했습니까?
- ☐ 캡·마개·라벨·잉크·접착제·코팅까지 구성요소 목록에 포함했습니까?
- ☐ 제조자와 EU 수입자의 책임을 확인했습니까?
- ☐ 포장 구성요소별 공급업체와 품번을 추적할 수 있습니까?
- ☐ 4대 중금속 합계 기준의 적합 근거가 있습니까?
- ☐ 식품접촉 포장이라면 PFAS 기준의 적합 근거가 있습니까?
- ☐ 시험성적서의 시료와 실제 수출포장이 동일하거나 대표성이 있습니까?
- ☐ 부속서 VII의 기술문서 항목을 채울 수 있습니까?
- ☐ 부속서 VIII 구조의 EU 적합성선언서를 준비했습니까?
- ☐ 포장이나 공급업체가 변경될 때 문서를 개정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 ☐ 2028년 이후 라벨과 2030년 이후 설계·재생원료 의무를 별도 일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8. 자주 발생하는 오해

오해 1. 2026 년 8 월 12 일부터 모든 포장에 새 EU 라벨을 바로 붙여야 한다.

설명: 조화된 재질 라벨은 별도의 적용일과 시행법령에 연동됩니다. 2026 년 8 월 12 일은 일반 적용일이며, 라벨 의무의 실제 적용일은 제 12 조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2. 2030 년 목표가 많으므로 2026 년에는 준비할 것이 없다.

설명: 경제운영자의 적합성 관리, 적용 가능한 물질 제한, 기술문서와 공급망 증빙은 2026 년 일반 적용일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포장 변경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2030 년 의무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오해 3. 시험성적서 한 장만 있으면 PPWR 대응이 완료된다.

설명: 시험성적서는 기술문서의 일부입니다. 실제 포장과 시험시료의 동일성, 포장구조, 공급업체 정보, 적용조항 평가와 EU 적합성선언서가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해 4. 2026 년 8 월 12 일 이전에 생산한 재고는 모두 자동 면제된다.

설명: 일반적인 포괄 면제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U 시장 출시시점, 경제운영자 역할과 각 조항의 경과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Regulation (EU) 2025/40

- 제 5 조: 포장 내 물질 제한, 4 대 중금속 및 식품접촉 포장의 PFAS 제한
- 제 6 조: 포장의 재활용 가능성
- 제 12 조: 포장 라벨
- 제 15 조: 제조자의 의무
- 제 16 조: 포장 또는 포장재 공급업체의 정보제공 의무
- 제 38 조: 적합성평가 절차
- 제 39 조: EU 적합성선언서
- 제 70 조: 기존 지침의 폐지 및 경과조치
- 제 71 조: 발효 및 적용
- 부속서 VII: 기술문서와 내부생산관리 절차
- 부속서 VIII: EU 적합성선언서 모델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본)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FAQ 17

PPWR 대응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2026 년 8 월 4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PPWR 대응을 처음 시작하는 기업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시험을 먼저 의뢰해야 하는지, 문서나 포장 목록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시험을 무조건 먼저 의뢰하기보다 실제 EU 수출포장을 정확히 식별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포장재와 시험시료가 연결되지 않으면 비용을 들인 시험결과도 TD 에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비순서는 'SKU 확정 → 포장단계·구성요소 목록화 → 공급망 자료수집 → 자료격차 분석 → 필요한 시험 → 적용조항 평가 → TD → DoC → 변경관리'가 효율적입니다.

1. 1 단계 - 대상제품과 포장범위 확정

1. EU 에 수출하거나 수출예정인 SKU 를 확정합니다.
2. 판매포장·묶음포장·운송포장을 구분합니다.
3. 캡·마개·라벨·잉크·접착제·코팅·테이프까지 목록화합니다.
4. 포장유형별 사진·도면·바코드·내부 품번을 연결합니다.

내용물 제품목록과 포장유형 목록은 별도로 만들고, 하나의 포장유형이 어떤 SKU 에 사용되는지 매핑합니다.

2. 2 단계 - 공급망 기본자료 수집

- 구성요소별 공급업체와 제조공장
- 제품명·품번·재질·원료등급·색상
- 두께·중량·치수·층구조와 BOM
- 잉크·접착제·코팅 사양
- 도면·제품사진·사용조건
- 4 대 중금속·PFAS·식품접촉 자료
- 공급업체 적합확인서와 변경통보 약정

3. 3 단계 - 자료격차와 시험 필요성 판단

- ☐ 각 자료가 실제 구매품의 공급업체·품번과 일치합니까?
- ☐ 시험시료가 최종 포장구조를 대표합니까?
- ☐ 4 대 중금속 네 물질과 합계판정이 가능합니까?
- ☐ 식품접촉 포장에 PFAS와 식품안전 근거가 있습니까?
- ☐ 잉크·접착제·코팅 자료가 누락되지 않았습니까?
- ☐ 검출한계와 시험방법이 기준판정에 적절합니까?

자료가 충분하면 공급업체 근거를 활용하고, 불일치·누락·고위험 항목에 한해 추가시험을 계획합니다.

4. 4 단계 - 적용조항 평가와 TD·DoC

1. 제 5 조부터 제 12 조 중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구분합니다.
2. 부적합 위험과 자료충분성을 평가합니다.
3. 부속서 VII 에 따라 포장설명·설계·재료·규격·시험자료를 TD 로 구성합니다.
4. 내부생산이 TD 와 일치하도록 검사·변경관리 절차를 연결합니다.
5. 적합성이 입증되면 부속서 VIII 구조의 DoC 를 작성·서명합니다.
6. EU 수입자에게 제공할 언어·형식·보안방식을 정합니다.

5. 30·60·90 일 실행 예시

첫 30 일

- 대상 SKU·포장유형 목록 완성
- 공급업체 자료요청서 발송
- 책임자와 EU 수입자 연락창구 지정

60 일까지

- 도면·BOM·시험자료 매칭
- 자료격차와 고위험 포장 선정
- 필요시험 발주와 TD 목차 작성

90 일까지

- 시험결과 반영과 적용조항 평가
- 우선 포장유형 TD·DoC 승인

- 변경관리·보관·당국요청 대응절차 운영

6. 최소 관리대장 항목

- SKU·바코드·제품명
- 포장단계·포장유형·구성요소
- 공급업체·품번·재질·규격
- 시험성적서·공급업체 문서번호
- 적용조항·평가결론·보완상태
- TD·DoC 번호·버전·승인일
- EU 수입자·게시 또는 제출이력
- 변경일·개정사유·보관종료일

7. 시작 전 최종 체크

- ☐ 실제 수출포장 샘플을 확보했습니까?
- ☐ 제품목록과 포장유형 목록을 분리했습니까?
- ☐ 공급업체 자료요청 담당자와 기한을 정했습니까?
- ☐ 시험 전에 시료대표성을 검토했습니까?
- ☐ TD·DoC 최종 승인권자를 정했습니까?
- ☐ 포장 변경 시 문서개정 절차가 있습니까?
- ☐ 2028 년·2030 년·2035 년 후속 의무도 일정에 넣었습니까?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15 조: 제조자의 적합성평가·TD·DoC·변경관리
- 제 16 조: 공급업체 정보제공
- 제 38 조·제 39 조: 적합성평가와 EU 적합성선언
- 부속서 VII·VIII: TD 와 DoC 구조
- Commission Notice C/2026/3084 및 EU 집행위원회 PPWR FAQ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분)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PART 2

적합성평가·기술문서(TD)·적합성선언서 (DoC)

기술문서(TD)와 EU 적합성선언서(DoC)의 역할, 작성책임, 필수항목, 언어와 보관기간을 실무 관점에서 확인합니다.

FAQ 03 기술문서(TD)와 EU 적합성선언서(DoC)는 무엇이 다르며 어떻게 준비하나요?

FAQ 04 TD와 DoC는 누가 작성하고 최종 책임을 지나요?

FAQ 05 TD와 DoC의 공식 양식은 있나요?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FAQ 06 시험성적서만으로 TD와 DoC를 작성할 수 있나요?

FAQ 30 TD·DoC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빈칸, N/A, '미정' 중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FAQ 16 TD·DoC는 어떤 언어로 작성하고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FAQ 03

기술문서(TD)와 EU 적합성선언서(DoC)는 무엇이 다르며 어떻게 준비하나요?

2026 년 8 월 4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TD)와 EU 적합성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는 같은 문서인가요? 각각 무엇을 담아야 하며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TD 와 DoC 는 목적이 다른 문서입니다. TD 는 포장설계, 재질, 제조, 적용 요구사항, 부적합 위험평가와 시험자료를 모아 적합성을 입증하는 증거 문서입니다. DoC 는 TD 에 기초하여 제조자가 해당 포장이 적용 가능한 PPWR 요구사항에 적합하다고 공식 선언하는 문서입니다.

PPWR 제 15 조는 제조자가 시장 출시 전에 제 38 조의 적합성평가를 실시하고 부속서 VII 에 따른 TD 를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적합성이 입증되면 제 39 조와 부속서 VIII 에 따라 DoC 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TD 없이 DoC 만 작성하거나 시험성적서만 첨부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1. TD 와 DoC 의 핵심 차이

TD 는 '왜 적합한가'를 보여주는 근거이고, DoC 는 '적합함을 누가 책임지고 선언하는가'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 TD: 포장 설명, 용도, 도면, 재질, 구성요소, 적용조항, 위험평가, 계산, 시험성적서와 공급업체 증빙을 포함하는 기술자료 묶음
- DoC: 제조자 정보, 포장 식별정보, 적용 EU 법령과 기술규격, 추가정보, 발행장소·날짜, 서명권자의 이름·직책·서명을 담은 선언서
- TD 는 일반적으로 시장감시기관 요청에 대비해 보관하는 상세 문서이고, DoC 는 부속서 VIII 의 모델 구조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 선언서

DoC 에 적힌 포장명, 식별번호, 제조자, 적용법령과 기술규격은 TD 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2. 부속서 VII 에 따른 TD 의 최소 구성

부속서 VII 의 내부생산관리(Module A)는 제조자가 스스로 포장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선언하는 구조입니다. TD 는 적용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부적합 위험을 적절히 분석·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포장의 일반 설명과 의도된 용도
- 개념설계, 제조도면과 구성요소의 재료정보
- 도면과 포장 작동·사용방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
-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한 조화표준, 공통규격과 기타 기술규격 목록
- 표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채택한 대안의 설명
- 제 6 조 재활용성, 제 10 조 포장 최소화, 제 11 조 재사용성 평가방법의 정성적 설명
- 시험성적서

현재 당장 적용되지 않는 후속 요구사항은 '해당 없음', '적용시점 도래 전', '후속 법령 확인 중'처럼 근거와 상태를 구분해 기록하고 추정값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부속서 VIII 에 따른 DoC 의 필수 항목

1. 선언서의 고유 식별번호
2. 포장의 고유 식별정보
3. 제조자와 해당하는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명칭·주소
4. 제조자의 단독 책임으로 선언서를 발행한다는 문구
5. 추적 가능한 포장 설명
6. 적용한 EU 조화법령
7. 적용한 조화표준·공통규격·기타 기술규격
8.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관 정보와 추가정보, 발행장소·날짜·이름·직책·서명

PPWR 제 39 조에 따라 DoC 는 계속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포장재질, 공급업체, 도면, 인쇄, 접착제, 규격 또는 시험근거가 변경되면 기존 선언의 유효성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4. 권장 작성 순서

1. EU 수출 SKU 와 실제 포장사양을 확정합니다.
2. 판매·묶음·운송포장과 캡·라벨·잉크·접착제 등 구성요소를 목록화합니다.
3. 해당 포장에 적용되는 제 5 조부터 제 12 조의 요구사항을 구분합니다.
4. 공급업체 사양서, BOM, 도면, 시험성적서와 적합자료를 수집합니다.

5. 자료가 실제 수출포장과 동일한 품번·재질·구조를 대표하는지 매칭합니다.
6. 부적합 위험과 적용조항별 적합성평가를 기록하고 TD 를 완성합니다.
7. TD 의 결론에 따라 DoC 를 작성하고 권한 있는 자가 서명합니다.
8. TD·DoC 의 버전과 변경이력을 관리합니다.

5. 실무 자가점검표

- ☐ DoC 의 포장 식별정보가 TD 와 일치합니까?
- ☐ 시험성적서의 시료가 실제 수출포장과 연결됩니까?
- ☐ 적용한 PPWR 조항과 적용하지 않은 조항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 ☐ 공급업체 문서번호와 버전을 추적할 수 있습니까?
- ☐ 서명권자가 제조자를 대표하여 책임질 권한이 있습니까?
- ☐ 포장 변경 시 재평가와 문서개정 절차가 있습니까?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15 조: 제조자의 적합성평가·TD·DoC 의무
- 제 38 조: 부속서 VII 에 따른 적합성평가
- 제 39 조: EU 적합성선언서와 제조자의 책임
- 부속서 VII: 내부생산관리와 기술문서
- 부속서 VIII: EU 적합성선언서 모델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본)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FAQ 04

TD 와 DoC 는 누가 작성하고 최종 책임을 지나요?

2026 년 8 월 4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한국 제조사, 포장재 공급업체, EU 수입자, 시험기관과 컨설팅기관 중 누가 TD 와 DoC 를 작성해야 하나요? 외부기관에 맡기면 최종 책임도 이전되나요?

핵심 답변

PPWR 제 15 조에 따라 제조자는 시장 출시 전에 적합성평가를 실시하고 TD 를 작성하며, 적합성이 입증되면 DoC 를 작성합니다. 제 39 조는 DoC 를 작성함으로써 제조자가 PPWR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공급업체는 제 16 조에 따라 제조자가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하고, EU 수입자는 제 18 조에 따라 제조자가 적합성평가와 TD 작성을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역할은 분담할 수 있지만 최종 서명책임은 계약서가 아니라 PPWR 상 경제운영자 지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1. 먼저 PPWR 상 제조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PPWR 제 3 조는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제조하는 자뿐 아니라,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설계·제조하게 하는 자도 제조자로 봅니다. 실제 포장재를 납품한 회사와 최종 포장제품의 제조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사 이름·상표로 포장된 제품을 EU 에 공급하는 식품기업
- 다른 회사에 포장 생산을 위탁했지만 자기 상표로 출시하는 기업
- 빈 포장재를 직접 제조하여 자기 이름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포장재 기업

소기업 예외와 동일 회원국 공급자 관련 특례가 있으므로 EU 내 위탁관계는 제 15 조 제 12 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경제운영자별 주요 역할

가. 제조자

- 적합성평가 실시

- 부속서 VII TD 작성
- 부속서 VIII DoC 작성·서명
- 연속생산의 적합성 유지
- 변경 시 재평가와 시정조치

나. 포장·포장재 공급업체

- 제조자에게 재질·도면·사양·시험 등 필요한 정보 제공
- 식품접촉 포장에 적용되는 관련 EU 문서도 해당 시 제공
- 제공 문서의 품번·적용범위·버전 명확화

다. EU 수입자

- 제조자의 적합성평가와 TD 작성 여부 확인
- DoC 사본 보관과 당국 요청 시 TD 확보
- 부적합 의심 시 시장 출시 중지와 시정조치

라.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서면 위임 범위 안에서 문서보관·당국협조를 수행할 수 있지만, 제 15 조 제 1 항의 적합포장 출시의무와 TD 작성의무 자체는 대리인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3. 시험기관이나 컨설팅기관이 작성해도 되나요?

외부기관은 시험, 자료정리, 적용조항 검토와 문서 초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기관의 보고서나 서명이 제조자의 DoC 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시험기관: 특정 시료와 시험방법에 대한 결과를 제공
- 컨설팅기관: 자료구조와 적합성평가 초안을 지원
- 제조자: 실제 생산포장과 증빙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승인·서명

외부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검토범위, 제외사항, 사용한 자료의 버전, 최종 승인권자와 변경통보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한국 수출기업이 EU 거래처와 합의할 사항

- ☐ PPWR 상 제조자와 수입자가 누구인지 서면으로 확인했습니까?
- ☐ DoC 발행주체와 서명권자를 정했습니까?
- ☐ EU 수입자에게 제공할 TD 범위와 보안방식을 정했습니까?

- ☐ 당국 요청 시 10 일 안에 자료를 제공할 연락처가 있습니까?
- ☐ 포장 변경과 시험성적서 만료·개정 시 통보책임을 정했습니까?
- ☐ 부적합 발견 시 회수·시정·당국통보 역할을 정했습니까?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3 조: 제조자와 경제운영자 정의
- 제 15 조: 제조자의 의무
- 제 16 조: 공급업체의 정보제공 의무
- 제 17 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 제 18 조: 수입자의 의무
- 제 39 조 제 4 항: DoC 작성에 따른 제조자의 책임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분)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FAQ 05

TD 와 DoC 의 공식 양식은 있나요?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년 8 월 4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EU 가 제공하는 TD 와 DoC 공식 서식이 있나요? 회사 자체 양식을 사용해도 되는지,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TD 는 표지부터 첨부자료까지 동일하게 복제해야 하는 단일 템플릿이 없습니다. 기업은 워드, 엑셀, 문서관리시스템 등 자체 형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부속서 VII 가 요구하는 기술내용과 위험평가, 적용규격, 시험성적서를 빠짐없이 연결해야 합니다.

DoC 는 부속서 VIII 의 공식 모델 구조를 따라야 합니다. 회사 로고나 문서번호 체계를 추가할 수는 있지만, 포장 식별, 제조자, 단독책임 문구, 적용법령, 기술규격, 추가정보와 서명 항목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1. TD 는 자체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속서 VII 는 문서의 내용과 적합성평가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표지색, 파일형식이나 페이지 순서까지 고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국이 포장을 식별하고 적용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추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문서 표지: 포장유형, TD 번호, 버전, 작성·검토·승인자
- 포장 식별: SKU, 포장단계, 품번, 도면번호와 사진
- 설계·재료: 구조, 재질, 두께, 중량, 치수와 구성요소
- 적용성 평가: 제 5 조부터 제 12 조의 적용 여부와 근거
- 위험평가: 자료 누락, 불일치와 부적합 가능성
- 증빙목록: 사양서, BOM, 시험성적서, 공급업체 선언과 문서버전
- 내부생산관리: 실제 생산품이 TD 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절차

2. DoC 는 부속서 VIII 모델을 따릅니다

1. DoC 고유 식별번호
2. 포장의 고유 식별번호
3. 제조자와 필요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명칭·주소
4. 제조자의 단독 책임으로 발행한다는 선언
5. 추적 가능한 포장 설명
6. 관련 EU 조화법령의 명칭과 공표참조
7. 적용한 조화표준·공통규격·기타 기술규격
8. 해당 시 인증기관 정보, 추가정보, 발행장소·날짜, 이름·직책·서명

3. 포장유형과 문서번호 관리방법

부속서 VII 는 포장유형별 서면 DoC 를 요구합니다. 동일 구조의 여러 SKU 를 한 포장유형으로 묶는 경우 문서 본문이나 별첨에 적용 SKU 와 바코드·품번을 모두 기재하여 추적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예시 TD 번호: TD-PPWR-PCH-001 Rev.02
- 예시 DoC 번호: DOC-PPWR-PCH-001 Rev.02
- 문서대장에 발행일, 개정사유, 대체문서와 승인자를 기록
- 시험성적서와 공급업체 문서번호를 증빙목록에 연결

문서번호 예시는 법정 형식이 아니므로 기업 내부 체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작성 시 자주 생기는 오류

- DoC 에 제품명만 적고 포장 자체를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 TD 와 DoC 의 제조자 명칭 또는 주소가 다른 경우
- 적용하지 않은 조항까지 근거 없이 모두 적합으로 표시한 경우
- 시험성적서의 시료·품번·재질이 실제 포장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
- 서명자 이름과 직책은 있으나 서명 또는 발행일이 없는 경우
- 포장 변경 후 과거 버전의 DoC 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5. 최종 점검표

- ☐ TD 에 부속서 VII 최소항목이 모두 있습니까?
- ☐ DoC 가 부속서 VIII 순서를 따릅니까?

- ☐ 포장유형과 적용 SKU 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까?
- ☐ 적용법령과 기술규격의 명칭·버전이 정확합니까?
- ☐ TD 와 DoC 의 버전이 서로 일치합니까?
- ☐ 권한 있는 자가 날짜와 함께 서명했습니까?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38 조: 적합성평가 절차
- 제 39 조: EU 적합성선언서의 구조·언어·최신성
- 부속서 VII: Module A 내부생산관리와 TD 최소내용
- 부속서 VIII: DoC 공식 모델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본)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FAQ 06

시험성적서만으로 TD 와 DoC 를 작성할 수 있나요?

2026 년 8 월 4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중금속이나 PFAS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바로 TD 와 DoC 를 작성할 수 있나요? 시험성적서 외에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가요?

핵심 답변

부속서 VII 는 TD 에 시험성적서를 포함하도록 하지만, 동시에 포장의 일반 설명, 용도, 도면, 구성재료, 적용 기술규격, 부적합 위험평가와 제조관리 자료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시험성적서 한 장만으로 적합성평가 전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시험결과를 사용하려면 보고서의 시료가 실제 수출포장을 대표한다는 연결근거가 필요합니다. 공급업체, 품번, 재질등급, 층구조, 색상, 인쇄, 잉크, 접착제, 코팅과 규격이 달라지면 기존 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1. 시험성적서가 입증하는 범위

- 특정 시료가 특정 시험방법으로 시험된 결과
- 보고서에 명시된 검출한계와 판정기준
- 시험 당시의 시료구조와 상태

시험성적서는 보고서에 적힌 시료 이상을 자동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같은 재질명이라도 원료등급, 안료, 첨가제, 공급업체와 제조공정이 다르면 결과를 그대로 확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2. 반드시 확인할 시료 매칭정보

- ☐ 시험기관과 보고서번호·발행일이 확인되니까?
- ☐ 시료 사진, 제품명, 품번과 제조사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 ☐ 실제 포장과 재질·등급·층구조가 일치하니까?
- ☐ 두께, 중량, 색상과 인쇄사양이 일치하니까?
- ☐ 잉크·접착제·코팅이 시험시료에 포함되었습니까?

- ☐ 적용하려는 SKU와 포장단계를 특정할 수 있습니까?
- ☐ 시험방법과 검출한계가 규제기준 판정에 적절합니까?

3. 시험 외에 필요한 자료

- 포장도면, 사양서와 BOM
- 구성요소별 재질·원료등급·공급업체·품번
- 공급업체 DoC 또는 물질제한 적합 확인서
- 식품접촉 포장에 적용되는 관련 EU 적합문서
- 적용 PPWR 조항과 적합성평가표
- 시험자료 적용범위와 동일성 검토기록
- 변경관리와 연속생산의 적합성 유지절차

4. 언제 추가시험을 검토해야 하나요?

- 보고서 시료의 제조사나 품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실제 포장과 층구조·원료등급·색상·인쇄가 다른 경우
- 보고서가 원재료만 시험했지만 최종 포장에는 잉크·접착제·코팅이 추가되는 경우
- 시험방법의 검출한계가 규제기준보다 높아 판정이 어려운 경우
- 공급업체·원료·공정 변경 후 영향평가가 없는 경우
- 고객이나 시장감시기관이 완성 포장에 대한 추가근거를 요구하는 경우

5. TD에 시험결과를 연결하는 방법

1. 시험성적서마다 문서번호와 시료정보를 등록합니다.
2. 해당 보고서를 적용할 구성요소·포장유형·SKU를 매칭합니다.
3. 일치항목과 차이항목을 비교하고 차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4. 시험기준, 결과, 검출한계와 적합성 결론을 적용조항별 평가표에 기록합니다.
5. 원본 보고서와 번역본·요약본을 구분하여 보관합니다.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적합'으로 단정하지 말고 '공급업체 확인 중', '추가시험 필요'처럼 상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15 조: 제조자의 적합성평가와 TD 작성
- 제 16 조: 공급업체의 정보·문서 제공
- 제 38 조: 적합성평가
- 부속서 VII 제 2 항: TD 최소내용과 시험성적서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본)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FAQ 30

TD·DoC 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빈칸, N/A, '미정' 중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2026 년 8 월 10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공급업체 자료가 아직 없어 TD 양식의 일부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빈칸으로 두거나 N/A, 미정, 자료요청 중이라고 적은 상태로 DoC 에 서명해도 되나요?

핵심 답변

PPWR 부속서 VII 는 적용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평가, 위험분석, 시험·계산과 기술자료를 요구합니다. 최종문서의 설명 없는 공란은 검토누락인지 비적용인지 알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N/A 는 해당 포장에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을 때만 사용하고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플라스틱 포장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최소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처럼 재질·용도·예외조항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필수항목의 자료가 아직 없는 상태는 N/A 가 아니라 미결사항입니다. 초안·검분석표에서는 '미정(TBC)', '자료요청 중'으로 담당자·기한을 관리할 수 있지만, 적합성이 입증되기 전에는 최종 DoC 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1. 표시용어의 권장 사용

- 공란: 최종문서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누락 또는 검토 여부가 불명확
- N/A: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때만 사용하고 비적용 근거를 기재
- 미정(TBC): 적용 가능하지만 결론·자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 상태
- 자료요청 중: 공급업체 등 외부자료 대기상태로 요청일·담당자·기한을 함께 기록
- 없음(None): 확인 결과 해당 성분·구성품·변경이 실제로 없음을 증빙할 수 있을 때 사용
- 현재 적용 전(Not yet applicable): 미래 적용항목의 적용일과 재검토일을 함께 표시

2. N/A 근거 작성 예시

'제 7 조 재생원료 최소비율: N/A - 본 포장 형식은 종이·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플라스틱 포장 최소비율 대상이 아님. BOM 버전 P-03 참조.'처럼 대상, 이유와 증빙문서를 함께 적으십시오.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항번호, 포장 용도, 예외조건 충족자료와 승인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편의상 자료가 없다는 이유는 N/A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미정항목 관리표

- ☐ 포장코드·SKU 와 해당 TD 버전
- ☐ 미확인 항목과 적용조항
- ☐ 필요한 증빙 또는 시험의 구체적 명칭
- ☐ 자료 제공자와 내부 책임자
- ☐ 요청일·회신기한·후속조치일
- ☐ 미확인 상태의 위험과 임시 통제조치
- ☐ 종결일·검토자·TD 반영 버전

4. 최종 DoC 발행 전 통제

1. 적용조항 목록과 N/A 사유를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2. 미정·자료요청 중인 필수항목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시험·공급업체 자료가 정확한 포장코드와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4. 위험평가와 TD 의 적합결론을 승인합니다.
5. 모든 적용요구가 입증된 후 권한자가 DoC 에 서명합니다.
6. 미래 적용항목의 재검토 알림과 문서 갱신일을 설정합니다.

5. 문서 상태와 버전관리

- 초안(Draft): 미정항목 허용, 외부 적합선언으로 배포 금지
- 검토중(Under review): 증빙과 판단의 내부 검토단계
- 승인본(Approved): 적용요구사항의 미결항목이 해소된 TD
- 서명본(Signed DoC): 권한자가 발행한 EU 적합성선언
- 폐기본(Superseded): 새 버전으로 교체되었으나 추적을 위해 보관

제 39 조는 DoC 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도록 합니다. 포장·공급업체·규정이 변경되면 N/A 와 적합결론을 다시 검토하고, 개정이력에 변경이유와 적용로트를 기록하십시오.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15 조·제 38 조·제 39 조: 적합성평가, TD 와 EU 적합성선언

- 부속서 VII: 적용요구사항, 위험분석, 시험·계산과 기술문서
- 부속서 VIII: EU 적합성선언의 필수 구조
- 제 15 조 제 4 항·제 39 조 제 2 항: 변경관리와 지속적 갱신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본)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FAQ 16

TD·DoC 는 어떤 언어로 작성하고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2026 년 8 월 4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한국어 또는 영어로 TD 와 DoC 를 작성해도 되나요? 문서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며 EU 당국이 요청하면 얼마나 빨리 제출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PPWR 제 39 조 제 2 항은 DoC 를 포장에 표시되거나 출시되거나 제공되는 회원국이 요구하는 하나 이상의 언어로 작성하거나 번역하도록 규정합니다. 영어본만으로 충분한지는 대상 회원국의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 15 조 제 10 항에 따라 제조자는 당국의 정당한 요청을 받으면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TD 를 그 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언어로 제공해야 하며, 관련 문서는 요청 수령 후 10 일 이내 제공해야 합니다.

1. 권장 언어 운영방식

- 원본 관리본: 회사 내부 작성·승인에 사용하는 한국어 또는 영어
- EU 공통본: EU 수입자와 검토하기 쉬운 영어본
- 회원국 제출본: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공식언어 번역본

번역본에는 원문 문서번호·버전·발행일을 표시하고 원문과 번역본의 우선관계, 번역 검토자와 승인자를 기록합니다. 자동번역만 사용한 경우 법률용어와 수치·단위를 별도로 검수해야 합니다.

2. 보관기간

- 일회용 포장: EU 시장 출시일로부터 5 년
- 재사용 포장: EU 시장 출시일로부터 10 년

제조자는 TD 와 DoC 를 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EU 수입자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각 조항에 따라 DoC 사본과 TD 접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관기산점은 단순 문서작성일이 아니라 해당 포장의 시장 출시일입니다. 여러 배치와 장기간 판매제품은 마지막 시장 출시분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보관종료일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당국 요청 시 10 일 대응

1. 요청기관·법적 근거·대상 포장과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2. 대상 TD·DoC 버전과 실제 시장출시 포장을 매칭합니다.
3. 요구언어와 전자·종이 제출형식을 확인합니다.
4. 기밀자료의 제출방법과 접근권한을 정합니다.
5. 승인된 자료를 10 일 안에 제출하고 송수신 기록을 보관합니다.
6. 추가질문·시정조치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4. 언제 문서를 개정해야 하나요?

- 포장재질·충구조·규격·중량·치수 변경
- 공급업체·원료등급·품번·생산공장 변경
- 잉크·접착제·코팅 또는 색상 변경
- 시험성적서·기술규격·적용법령 변경
- 적용 SKU 추가·삭제 또는 포장용도 변경
- 부적합·고객불만·시장감시 결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 15 조 제 4 항은 포장설계·특성과 관련 표준·기술규격의 변경을 적절히 고려하고 적합성에 영향이 있으면 재평가하도록 합니다.

5. 문서관리대장 권장항목

- ☐ TD·DoC 고유번호와 버전
- ☐ 포장유형·SKU·도면번호
- ☐ 작성·검토·승인자와 발행일
- ☐ 적용언어와 번역본 버전
- ☐ 시장 출시일과 보관종료 예정일
- ☐ 시험성적서와 공급업체 문서번호
- ☐ 개정사유와 대체문서
- ☐ EU 수입자·당국 제출이력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15 조 제 3 항: 일회용 5 년·재사용 10 년 보관

- 제 15 조 제 4 항: 변경 시 재평가
- 제 15 조 제 10 항: 당국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10 일 제출
- 제 17 조·제 18 조: 대리인과 수입자의 문서보관·제공
- 제 39 조 제 2 항: 회원국 요구언어와 DoC 최신성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본)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PART 3

포장구조·구성요소·유해물질

복합재 포장과 캡·라벨·잉크·접착제·보조요소의 범위를 파악하고, 중금속 및 PFAS 제한요건을 점검합니다.

FAQ 07 복합재 파우치는 어떤 자료와 시험성적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FAQ 14 병의 캡·라벨·잉크·접착제도 별도 자료가 필요한가요?

FAQ 25 실리카겔·산소흡수제·제습제도 포장 구성요소인가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FAQ 08 4대 중금속 기준은 어느 포장재에 적용되나요?

FAQ 09 식품접촉 포장의 PFAS 제한기준과 적용범위는 무엇인가요?

FAQ 10 총불소 50 mg/kg 미만 시험결과로 PFAS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나요?

FAQ 07

복합재 파우치는 어떤 자료와 시험성적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2026 년 8 월 4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PET/AL/PE, PET/NY/LLDPE 와 같은 복합재 파우치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한 개 층의 시험성적서나 공급업체 확인서만으로 충분한가요?

핵심 답변

복합재 포장은 여러 재료와 접착·인쇄 공정이 결합되므로 최종 적합성을 판단하려면 층구조 전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한 개 PE 원료의 시험결과만으로 인쇄·접착·코팅된 완성 파우치 전체를 대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PPWR 제 5 조의 중금속과 식품접촉 포장 PFAS 제한, 부속서 VII 의 기술문서 요구, 제 16 조의 공급업체 정보제공 의무를 함께 적용합니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PPWR 외에 Regulation (EC) No 1935/2004, GMP Regulation (EC) No 2023/2006 와 해당 재질별 식품접촉 규정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1. 먼저 최종 층구조를 확정합니다

포장도면 또는 사양서에 바깥층부터 식품접촉층까지 순서, 재질, 등급과 명목두께를 기록합니다.

- 예시: 인쇄 PET 12 μm / 접착제 / AL 7 μm / 접착제 / LLDPE 70 μm
- 각 층의 제조사·공급업체·제품명·품번·원료등급
- 인쇄면, 인쇄방식, 잉크 시리즈와 색상
- 접착제·프라이머·바니시·코팅의 제품명과 도포위치
- 완성 파우치 규격, 중량, 실링조건과 용도

BOM 에는 NY 로 적혀 있는데 시험자료는 PET 인 경우처럼 재질명이 다르면 동일 자료로 처리하지 말고 공급업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구성요소별로 수집할 자료

- 필름·포일: 사양서, 재질등급, 두께, 물질제한 확인서와 시험자료
- 잉크·코팅: 제품코드, 색상, 적용위치, 중금속·PFAS 관련 공급업체 정보

- 접착제·프라이머: 제품코드, 혼합비, 경화조건, 적용량과 적합 확인자료
- 완성 파우치: 최종 도면, BOM, 라미네이션·인쇄·실링 공정정보
- 식품접촉용: 접촉면, 식품종류, 사용온도·시간, 이행시험과 관련 DoC

3. 어떤 시험자료가 필요한가요?

가. 4대 중금속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의 납·카드뮴·수은·6가크롬 농도 합계 100 mg/kg 기준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급업체 자료를 사용할 경우 실제 품번과 적용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나. 식품접촉 포장의 PFAS

2026년 8월 12일부터 제5조 제5항의 PFAS 기준이 적용됩니다. 잉크·바니시·코팅·접착제를 포함한 실제 포장구조를 고려하고 총불소 또는 단계별 PFAS 시험결과와 시료대표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 식품접촉 안전성

PPWR 시험과 식품접촉 이행시험은 목적이 다릅니다. 플라스틱 식품접촉층에는 Regulation (EU) No 10/2011 등 적용 가능한 재질별 규정과 사용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개별 원재료 시험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

- ☐ 시험자료의 공급업체와 실제 구매처가 일치합니까?
- ☐ 제품명·품번·원료등급과 재질이 일치합니까?
- ☐ 두께·색상·첨가제와 적용공정 차이를 평가했습니까?
- ☐ 잉크·접착제·코팅이 별도 자료로 보완되어 있습니까?
- ☐ 최종 파우치 BOM과 각 보고서가 문서번호로 연결됩니까?
- ☐ 식품접촉 조건과 시험조건이 실제 용도를 대표합니까?

5. 권장 TD 첨부목록

1. 최종 파우치 도면과 제품사진
2. 층별 BOM과 공급업체·품번 목록
3. 필름·포일·잉크·접착제·코팅 사양서
4. 4대 중금속 및 해당 시 PFAS 시험·적합자료
5. 식품접촉 적합성선언과 이행시험 자료
6. 시험자료와 실제 포장 간 동일성 검토표

7. 적용조항 평가표와 변경관리 기록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5 조: 중금속과 식품접촉 포장의 PFAS
- 제 6 조 제 9 항: 포장 구성요소를 포함한 재활용성 평가
- 제 16 조: 공급업체 정보제공 의무
- 부속서 VII: 설계·재료·시험자료를 포함한 TD
- Regulation (EC) No 1935/2004: 식품접촉재료 기본요건
- Regulation (EC) No 2023/2006: 식품접촉재료 우수제조관리
- Regulation (EU) No 10/2011: 플라스틱 식품접촉재료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분)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Regulation (EC) No 1935/2004

<https://eur-lex.europa.eu/eli/reg/2004/1935/oj/eng>

Regulation (EC) No 2023/2006

<https://eur-lex.europa.eu/eli/reg/2006/2023/oj/eng>

Regulation (EU) No 10/2011

<https://eur-lex.europa.eu/eli/reg/2011/10/oj/eng>

FAQ 14

병의 캡·라벨·잉크·접착제도 별도 자료가 필요한가요?

2026 년 8 월 4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병이나 용기 본체의 시험자료만 있으면 되나요? 캡, 라벨, 인쇄잉크, 접착제, 코팅과 실링재도 별도로 사양서나 시험자료를 받아야 하나요?

핵심 답변

PPWR 제 3 조는 포장에 통합된 구성품과 포장기능을 수행하며 제품에 부착된 보조요소도 포장범위에 포함합니다. 제 5 조의 4 대 중금속은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적용되며, 제 6 조의 재활용성 평가는 통합·분리 구성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모든 구성요소를 반드시 각각 시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종 포장 전체를 대표하는 시험자료나 공급업체 적합자료가 충분할 수 있지만, 어떤 캡·라벨·잉크·접착제까지 포함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1. 구성요소별로 확인할 정보

- 캡·마개: 재질, 라이너, 색상, 중량, 공급업체와 품번
- 라벨·슬리브: 기재, 코팅, 접착제, 인쇄, 박·금속화 여부
- 잉크·바니시: 제품시리즈, 색상, 적용면, 경화방식과 공급업체
- 접착제·프라이머: 제품코드, 혼합비, 도포량, 경화조건과 위치
- 실링재·개스킷: 재질, 식품접촉 여부, 사용온도와 규격
- 코팅: 기능, 조성정보, 도포면과 PFAS 관련 확인

2. 4대 중금속 자료

제 5 조 제 4 항은 납·카드뮴·수은·6 가크롬의 농도 합계 100 mg/kg 기준을 포장 구성요소에도 적용합니다.

색소·안료를 사용하는 캡, 라벨과 잉크는 품번·색상별 적용범위를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색상의 시험결과를 다른 색상 전체에 적용하려면 동일 원료체계와 최악조건을 대표한다는 공급업체 근거가 필요합니다.

3. 식품접촉 포장의 PFAS와 식품안전

식품접촉 포장은 2026년 8월 12일부터 PFAS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접촉층뿐 아니라 최종 포장단위의 코팅·잉크·접착제에서 PFAS가 존재하거나 식품접촉면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PPWR 적합성은 식품접촉 안전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접촉면에는 Regulation (EC) No 1935/2004, GMP Regulation (EC) No 2023/2006와 재질별 규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4. 재활용성 평가에서 구성요소를 보는 방법

제 6조 제 9항은 통합 구성요소를 재활용성 평가에 포함하고, 운송·선별 중 분리될 수 있는 통합요소는 별도 평가하도록 합니다. 분리 구성요소도 각각 평가하며 모든 구성요소가 주 포장체의 재활용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라벨 재질과 접착제가 병 선별·세척에 미치는 영향
- 금속 스프링·펌프가 플라스틱 용기 선별에 미치는 영향
- 검정안료와 광학선별 가능성
- 다층 슬리브·코팅과 재질 분리 가능성

5. 자료완성 점검표

- ☐ 최종 포장 BOM에 모든 캡·라벨·잉크·접착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 각 구성요소의 공급업체와 품번을 추적할 수 있습니까?
- ☐ 색상·인쇄·코팅 사양의 적용범위가 명확합니까?
- ☐ 중금속과 해당 시 PFAS 근거가 있습니까?
- ☐ 식품접촉 관련 문서가 실제 사용조건을 대표합니까?
- ☐ 재활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했습니까?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3조: 포장 구성품과 보조요소
- 제 5조: 중금속과 식품접촉 포장의 PFAS
- 제 6조 제 9항: 통합·분리 구성요소의 재활용성 평가
- 부속서 VII: 구성요소 재료와 시험자료
- Regulation (EC) No 1935/2004 및 No 2023/2006: 식품접촉재료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본)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Regulation (EC) No 1935/2004

<https://eur-lex.europa.eu/eli/reg/2004/1935/oj/eng>

Regulation (EC) No 2023/2006

<https://eur-lex.europa.eu/eli/reg/2006/2023/oj/eng>

FAQ 25

실리카겔·산소흡수제·제습제도 포장 구성요소인가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2026 년 8 월 10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제품 상자 안에 넣는 실리카겔, 산소흡수제 또는 제습제 봉지도 PPWR 포장 구성품으로 중량과 시험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식품에 직접 닿지 않으면 자료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PPWR 의 포장 정의는 제품을 담고 보호·취급·배송·표시하기 위한 물품과 그 통합 구성품·부수요소를 포함합니다. 부속서 I 의 예시는 참고목록일 뿐이므로, 실리카겔 봉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포함 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제품 보호를 위해 포장 안에 넣고 제품과 함께 소비자에게 전달·폐기되는 소형 봉지는 포장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품의 필수 구성품인지, 반복사용되는 장치인지, 별도 상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능·설계·폐기방식을 문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연장이나 상태 유지를 위해 주변의 산소·수분을 흡수하는 물품은 Regulation (EC) 450/2009 의 활성 식품접촉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식품 주변환경과 상호작용하므로 공급업체 적합선언과 사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포장 여부 판단 질문

- ☐ 경제운영자가 제품의 보호·보존·배송을 위해 사용합니까?
- ☐ 포장에 통합되거나 제품 또는 포장에 직접 부착되어 있습니까?
- ☐ 제품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구성품입니까?
- ☐ 소비자가 제품과 함께 사용하거나 곧바로 폐기합니까?
- ☐ 별도 판매되는 상품 또는 반복사용 장치입니까?
- ☐ 부속서 I 예시뿐 아니라 제 3 조의 포장 정의를 충족합니까?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포장 BOM 과 위험평가에 잠정 포함하고, EU 수입자 또는 관할기관과 분류근거를 확인하는 보수적 접근이 좋습니다.

2. 공급업체에서 받을 기본자료

- 제품명·부품번호·제조자·용도와 사용조건
- 외피 봉지의 재질·층구조·인쇄·접착제와 중량
- 내용물의 화학명·조성·안전자료 및 흡수성능
- 로트·제조일·유효기간과 보관조건
- 누출·파손·오사용 위험과 경고표시 자료
- 재질·조성·제조공정 변경 시 통지 약정

3. 식품용 산소흡수제·제습제

활성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 주변환경에서 물질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여 보존상태를 유지·개선하도록 설계된 재료입니다. 소형 종이봉지에 활성물질을 넣은 형태도 규정의 예시에 포함됩니다.

- ☐ Regulation (EC) 1935/2004 일반 안전요건 적합
- ☐ Regulation (EC) 450/2009 활성재료의 허용물질·표시·적합선언
- ☐ 외피가 플라스틱이면 Regulation (EU) 10/2011 적용 여부
- ☐ 의도된 식품유형, 접촉여부, 온도·시간, 최대 사용량
- ☐ 이행시험·이행가능성 평가와 오사용 방지 표시

4. PPWR 자료에 반영할 내용

1. 포장 여부 판단결론과 근거를 위험평가에 기록합니다.
2. 포장으로 판단되면 구성품 목록과 포장 중량에 반영합니다.
3. 외피·잉크·접착제의 중금속·재활용성 등 적용항목을 검토합니다.
4. 식품접촉 또는 활성재료 규정의 자료를 PPWR 자료와 별도 구분해 연결합니다.
5. 제습제 변경 시 포장중량·재질·식품안전 평가와 TD 를 함께 갱신합니다.

5. 자주 발생하는 오류

- 내용물이 실리카겔이라는 이유만으로 포장 평가에서 자동 제외
- 식품에 직접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활성재료 규정을 검토하지 않음
- 외피 봉지 재질과 인쇄·접착제 자료를 받지 않음
- 식용 제품과 비식용 제품에 같은 흡수제를 승인 없이 공용
- 포장 변경관리에서 제습제 중량과 공급업체 변경을 누락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3 조 제 1 항 및 부속서 I: 포장 정의와 예시
- Commission Notice C/2026/3084 제 1 절: 포장 해당 여부 판단
- Regulation (EC) 1935/2004: 식품접촉재료 일반 안전요건
- Regulation (EC) 450/2009: 활성·지능형 식품접촉재료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본)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식품접촉재료 Regulation (EC) 1935/2004

<https://eur-lex.europa.eu/eli/reg/2004/1935/oj/eng>

활성·지능형 재료 Regulation (EC) 450/2009

<https://eur-lex.europa.eu/eli/reg/2009/450/oj/eng>

FAQ 08

4대 중금속 기준은 어느 포장재에 적용되나요?

2026년 8월 4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 최신 FAQ 반영

질문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 VI) 기준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만 적용되나요?
라벨, 잉크, 접착제, 상자와 운송포장도 확인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PPWR 제 5조 제 4항은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존재하는 네 물질의 농도 합계가 100 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개별 물질마다 100 mg/kg이 아니라 네 물질을 합산한 기준입니다.

적용범위는 재질이나 식품접촉 여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판매포장, 묶음포장, 운송포장과 캡·마개·라벨·잉크·접착제·코팅·테이프 등 포장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EU 결정에 따른 특정 재생재료·폐쇄형 관리루프의 예외는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100 mg/kg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은 포장이나 포장 구성요소에 존재하는 납, 카드뮴, 수은과 6가크롬 농도의 합계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시험대상에서 Pb 30 mg/kg, Cd 5 mg/kg, Hg 2 mg/kg, Cr VI 20 mg/kg이면 합계는 57 mg/kg입니다. 다만 시험보고서의 정량한계, 불검출 표시와 계산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총크롬 결과는 6가크롬 결과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보고서가 어떤 화학종을 측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떤 포장단계를 확인해야 하나요?

- 판매포장: 파우치, 병, 캔, 트레이, 뚜껑, 마개와 실링재
- 묶음포장: 단상자, 번들필름, 칸막이와 고정재
- 운송포장: 골판지상자, 테이프, 스트레치필름, 팔레트 고정재
- 구성요소: 라벨, 인쇄잉크, 접착제, 코팅, 바니시, 스테이플과 클립

모든 구성요소를 반드시 각각 새로 시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품번과 연결되는 공급업체 시험성적서·적합확인서가 충분하면 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적용범위와 동일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3. 공급업체 자료로 입증할 수 있나요?

PPWR 제 16 조는 공급업체가 제조자에게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조자는 공급업체 자료를 TD 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공급업체명과 실제 구매처가 일치합니까?
- ☐ 제품명·품번·재질·색상과 제조공정이 일치합니까?
- ☐ 보고서가 Pb·Cd·Hg·Cr VI 네 물질을 모두 다룹니까?
- ☐ 결과가 개별값과 합계판정에 충분합니까?
- ☐ 시험시료 사진·규격·발행일·보고서번호가 있습니까?
- ☐ 적용 가능한 포장유형과 SKU 를 명확히 매칭했습니까?

4. 예외가 있을 수 있나요?

제 5 조 제 8 항은 과학·기술 발전을 고려해 재생재료, 폐쇄·통제된 제품루프 또는 특정 포장유형에 대한 조건부 예외를 위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Decisions 2001/171/EC 와 2009/292/EC 도 관련 후속조치 전까지 유지됩니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대상 재료·루프·표시·보고조건을 충족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재생원료'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5. TD 에 기록할 내용

1. 포장단계별 구성요소와 공급업체·품번을 정리합니다.
2. 각 구성요소의 중금속 증빙문서와 적용범위를 연결합니다.
3. 네 물질의 개별결과·합계·검출한계와 판정결론을 기록합니다.
4. 자료가 없는 요소는 공급업체 보완요청 또는 추가시험 대상으로 표시합니다.
5. 예외를 적용한 경우 법적 근거와 충족조건을 별도 첨부합니다.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5 조 제 4 항: 4 대 중금속 합계 100 mg/kg
- 제 5 조 제 6 항: TD 를 통한 적합성 입증
- 제 5 조 제 7 항·제 8 항: 기준조정과 조건부 예외
- 제 16 조: 공급업체 정보제공 의무
- 부속서 VII: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기술문서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본)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FAQ 09

식품접촉 포장의 PFAS 제한기준과 적용범위는 무엇인가요?

2026 년 8 월 4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PFAS 제한은 어떤 포장에 적용되며 기준치는 얼마인가요? 식품과 직접 닿는 안쪽 필름만 확인하면 되는지, PFAS 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PPWR 제 5 조 제 5 항은 2026 년 8 월 12 일부터 일정 농도 이상의 PFAS 를 함유한 식품접촉 포장의 EU 시장 출시를 금지합니다. 다른 EU 법령이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도 함께 적용됩니다.

PFAS 를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선언은 유용한 공급망 정보이지만 농도기준 충족을 자동으로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포장구조, 오염 가능성, 시험자료와 공급업체 정보를 종합해 TD 에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1. 세 가지 PFAS 한계값

- 개별 PFAS: 표적 PFAS 분석으로 측정한 각 PFAS 25 ppb, 고분자 PFAS 는 정량에서 제외
- PFAS 합계: 필요한 경우 전구체 분해 후 표적분석 합계 250 ppb, 고분자 PFAS 는 정량에서 제외
- PFAS 총량: 고분자 PFAS 를 포함한 PFAS 50 ppm

25 ppb 는 25 µg/kg, 250 ppb 는 250 µg/kg, 50 ppm 은 50 mg/kg 에 해당합니다. 각 기준은 단위와 분석대상이 다르므로 하나의 결과를 다른 기준과 혼용하면 안 됩니다.

2. 어떤 포장이 대상인가요?

대상은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되었거나 실제로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입니다. 직접 접촉층뿐 아니라 최종 식품접촉 포장단위에서 PFAS 가 존재할 수 있는 잉크, 바니시, 코팅, 접착제와 다른 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종이컵·용기와 내유·내수 코팅
- 다층 파우치와 접착제·인쇄잉크
- 베이커리·패스트푸드 포장지
- 성형용기, 뚜껑, 실링필름과 개스킷

- 식품과 함께 가열·냉동·장기보관되는 포장

외부 운송상자처럼 식품접촉 포장에 해당하지 않는 포장은 제 5 조 제 5 항의 PFAS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다른 화학물질 규제와 고객요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총불소가 50 mg/kg 을 넘는 경우

제 5 조 제 5 항은 총불소 함량이 50 mg/kg 을 초과하면 관련 공급망 사업자가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불소가 PFAS 또는 비 PFAS 로 측정된 양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는 TD 작성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총불소 초과가 곧바로 PFAS 50 ppm 초과와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무기불소 가능성을 구분하는 추가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2026 년 EU 가이드의 시험 접근

1. 총불소(TF)가 50 mg/kg 미만이면 시료를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TF 가 50 mg/kg 을 초과하면 열분해-GC/MS 등의 방법으로 유기불소와 무기불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기불소가 50 mg/kg 미만이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25 µg/kg 과 250 µg/kg 기준 확인에는 직접 TOP 분석이 권고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정보에 기초해 1 단계 시험에 적합한 시료는 2 단계와 3 단계에도 적합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EU 차원의 완전한 조화시험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감독기관의 식품접촉재료 통제권한은 유지됩니다.

5. 재고와 적용일 유의사항

Commission Notice C/2026/3084 는 2026 년 8 월 12 일 전에 생산된 PFAS 함유 포장에 대해 재고소진을 위한 별도 전환기간이 PPWR 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생산일만 보고 자동 면제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 실제 EU 시장 출시시점을 확인했습니까?
- ☐ 시험시료가 최종 포장과 동일한 구조입니까?
- ☐ 잉크·접착제·코팅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 총불소와 표적 PFAS 결과의 단위·검출한계를 확인했습니까?
- ☐ PFAS 비의도적 사용확인서와 시험근거를 구분했습니까?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5 조 제 5 항: 식품접촉 포장의 PFAS 한계값
- 제 5 조 제 6 항: TD 를 통한 적합성 입증

- Commission Notice C/2026/3084: 단계별 PFAS 시험 접근과 재고 전환기간 안내
- Regulation (EC) No 1935/2004: 식품접촉재료 기본요건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분)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Regulation (EC) No 1935/2004

<https://eur-lex.europa.eu/eli/reg/2004/1935/oj/eng>

FAQ 10

총불소 50 mg/kg 미만 시험결과로 PFAS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나요?

2026 년 8 월 4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식품접촉 포장의 총불소 시험결과가 50 mg/kg 미만이면 PPWR PFAS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나요?
추가 TOP 분석이나 개별 PFAS 분석은 언제 필요한가요?

핵심 답변

Commission Notice C/2026/3084 는 PFAS 확인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제시합니다. 1 단계 총불소가 50 mg/kg 미만이면 해당 시료를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집행위원회가 보유한 근거에 따르면 1 단계에 적합한 시료는 후속 2·3 단계 시험에도 적합합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결론을 다른 포장이나 다른 공급업체 제품에 자동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시료의 품번, 재질, 층구조, 잉크, 접착제, 코팅, 두께와 제조공정이 실제 수출포장을 대표한다는 근거를 TD 에 남겨야 합니다.

1. EU 가이드의 단계별 시험방법

- 1 단계 - 총불소(TF) 정량: TF 가 50 mg/kg 미만이면 시료를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 단계 - 유기·무기불소 구분: TF 가 50 mg/kg 을 초과하면 열분해-GC/MS 등의 방법으로 불소가 유기불소인지 무기불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불소가 50 mg/kg 미만이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3 단계 - TOP 분석: 개별 PFAS 25 µg/kg 과 표적 PFAS 합계 250 µg/kg 기준의 확인에는 직접 TOP 분석이 권고됩니다.

2. TF 50 mg/kg 미만 결과를 사용할 조건

- ☐ 시험기관과 시험방법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 정량한계가 50 mg/kg 판정에 충분합니까?
- ☐ 시료 사진·제품명·품번·공급업체가 확인됩니까?
- ☐ 최종 포장의 모든 층과 인쇄·접착·코팅이 시험시료에 포함됩니까?

- ☐ 시험일 이후 원료·공급업체·공정 변경이 없습니까?
- ☐ 적용 SKU와 포장유형을 문서로 매칭했습니까?

3. 추가분석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TF가 50 mg/kg 이상이거나 정량한계 때문에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 무기안료·충전재 등 비 PFAS 불소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고객 또는 감독기관이 25 µg/kg·250 µg/kg 기준의 직접근거를 요구하는 경우
- 공급업체 비의도적 사용확인 및 시험결과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
- 시험시료와 실제 포장의 잉크·접착제·코팅 또는 층구조가 다른 경우
- 공정변경이나 오염 가능성으로 기존 결과의 대표성이 약한 경우

4. 성적서의 적합 문구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불소 불검출’, ‘PFAS 미사용’ 또는 ‘50 mg/kg 미만’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시험대상, 분석항목, 검출한계와 공급업체 선언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불검출: 해당 방법과 검출한계에서 결과가 기준 이하
- 비의도적 사용: 공급망에서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정보
- TF 50 mg/kg 미만: EU 가이드의 1 단계 스크리닝 결론
- 표적 PFAS 결과: 분석목록에 포함된 개별 물질의 측정결과

5. TD 기록 예시

1. 보고서번호, 시험기관, 시험일과 시험방법을 기록합니다.
2. 시료의 포장구조와 실제 수출포장을 비교합니다.
3. TF 결과와 50 mg/kg 기준의 결론을 기재합니다.
4. 추가분석을 하지 않은 이유 또는 실시한 2·3 단계 결과를 적습니다.
5. 적용 SKU·포장유형·공급업체 문서버전을 연결합니다.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5 조 제 5 항: PFAS 한계값과 총불소 관련 정보
- 제 5 조 제 6 항: TD 적합성 입증
- Commission Notice C/2026/3084: TF·유기불소·TOP 단계별 시험 접근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본)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PART 4

SKU·공급망·시험증빙 관리

SKU 별 문서 묶음, 포장단위 정보, 공급업체 자료와 영업비밀, 시험기관·성적서·식품접촉 증빙의 활용방법을 정리합니다.

FAQ 12 여러 SKU 를 하나의 TD·DoC 로 묶어 작성할 수 있나요?

FAQ 13 바코드·포장재 중량·치수는 어떤 포장단위와 단위로 작성하나요?

FAQ 11 포장재 공급업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나요? 제조사가 다시 시험해야 하나요?

FAQ 15 공급업체가 도면과 배합정보를 영업비밀로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FAQ 26 국내 KOLAS 또는 ISO/IEC 17025 시험기관의 성적서는 EU 에서 인정되나요?

FAQ 27 시험성적서에 유효기간이 없으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고 언제 재시험해야 하나요?

FAQ 28 식품접촉 적합성 자료와 PPWR 시험자료는 무엇이 다르며 둘 다 필요한가요?

FAQ 12

여러 SKU 를 하나의 TD·DoC 로 묶어 작성할 수 있나요?

2026 년 8 월 4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수출 SKU 가 많으면 TD 와 DoC 를 제품마다 각각 만들어야 하나요? 포장구조가 비슷한 여러 제품을 하나의 포장유형으로 묶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부속서 VII 는 포장유형별로 DoC 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속서 VIII 는 포장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문서단위는 식품 레시피나 마케팅 제품군보다 실제 포장유형을 중심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동일 포장유형으로 묶을 때에는 모든 SKU 에 같은 적합성 결론과 증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재질, 층구조, 공급업체, 잉크, 접착제, 규격 또는 사용조건이 달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별도 유형 또는 하위변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1.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대표 조건

- ☐ 포장기능과 포장단계가 동일합니까?
- ☐ 주재질과 다층구조가 동일합니까?
- ☐ 각 구성요소의 공급업체와 품번이 동일합니까?
- ☐ 두께·중량·규격의 차이가 시험대표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 ☐ 잉크·색상·접착제·코팅 사양이 동일합니까?
- ☐ 식품접촉 조건과 사용온도·시간이 동일합니까?
- ☐ 동일한 시험성적서와 공급업체 문서가 모두에 적용됩니까?

2. 별도 포장유형을 검토할 상황

- 병 용량에 따라 수지등급·색상·두께가 달라지는 경우
- 같은 파우치 이름이지만 PET/PE 와 PET/AL/PE 구조가 섞인 경우
- 공급업체나 생산공장이 다른 경우

- 인쇄잉크·코팅·접착제 시리즈가 다른 경우
- 캡·라벨·실링재 구성 또는 재질이 다른 경우
- 식품접촉 조건이나 멸균·가열조건이 다른 경우
- 기존 시험자료가 일부 SKU 만 대표하는 경우

3. 묶음작성 시 필요한 SKU 별첨표

- SKU·제품명·바코드 또는 내부 식별번호
- 판매포장·묶음포장·운송포장 구분
- 포장유형 코드와 도면번호
- 규격·중량·치수
- 구성요소별 공급업체와 품번
- 적용 시험성적서·공급업체 문서번호
- 해당 TD·DoC 번호와 버전

문서 본문에는 그룹화 논리와 허용변형 범위를 설명하고, 별첨표에 포함된 SKU 가 변경되면 문서버전 또는 부속서 버전을 갱신해야 합니다.

4. 실무 예시

예시 1 - 묶을 수 있는 경우

내용물 맛만 다르고 동일 공급업체의 동일 PET/AL/LLDPE 파우치, 동일 규격·인쇄시스템·접착제와 같은 시험자료를 사용하는 여러 SKU 는 하나의 포장유형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각 SKU 와 인쇄도안은 별첨에 표시합니다.

예시 2 - 분리해야 하는 경우

같은 제품군이라도 한 SKU 는 투명 PET/PE 파우치, 다른 SKU 는 알루미늄 포함 파우치를 사용한다면 재질구조와 재활용성·시험범위가 다르므로 별도 포장유형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 그룹화 승인절차

1. 전체 SKU 의 실제 포장사양을 수집합니다.
2. 재질·구조·공급업체·규격·공정을 비교합니다.
3. 시험자료 적용범위와 차이의 영향을 평가합니다.
4. 그룹화 기준과 허용변형 범위를 문서화합니다.

5. 품질·규제 담당자가 포장유형과 SKU 목록을 승인합니다.
6. 변경 시 그룹 유지 여부를 재평가합니다.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15 조 제 5 항: 포장의 식별정보
- 제 39 조: DoC 의 적합성 선언과 최신성
- 부속서 VII 제 4 항: 포장유형별 서면 DoC
- 부속서 VIII: 추적 가능한 포장 식별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본)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FAQ 13

바코드·포장재 중량·치수는 어떤 포장단위와 단위로 작성하나요?

2026 년 8 월 4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TD 에 바코드, 포장재 중량과 치수를 어떤 단위로 적어야 하나요? 날개·묶음·운송상자 중 어느 포장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PPWR 제 15 조 제 5 항은 포장에 형식·배치·일련번호 또는 다른 식별요소를 두도록 요구합니다. 부속서 VII 과 VIII 도 포장을 평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설명과 고유 식별을 요구하지만, 모든 기업이 반드시 GTIN 한 종류만 사용하거나 특정 단위만 사용하도록 정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실제 공급되는 판매포장, 묶음포장과 운송포장을 각각 구분하고 그 단계에 부여된 바코드·GTIN·품번 또는 내부 식별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량은 내용물을 제외한 포장재 자체 중량, 치수는 측정상태와 방향을 정한 외형치수로 관리하는 것이 실무상 명확합니다.

1. 포장단계별 식별번호

- 판매포장: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날개 단위의 GTIN/EAN 또는 내부 품번
- 묶음포장: 여러 판매단위를 묶는 번들·트레이·단상자의 식별번호
- 운송포장: 출하상자·팔레트 단위의 GTIN, SSCC 또는 물류품번

바코드가 없는 포장에는 임의의 GTIN 을 만들기보다 회사가 실제 추적에 사용하는 품번·도면번호·포장유형 코드를 부여하고 문서대장과 연결합니다.

2. 포장재 중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포장 중량은 원칙적으로 제품 내용물을 제외한 포장재 자체의 질량으로 기록합니다. g 단위를 사용하면 구성요소 합계와 포장단위 합계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 병·캔·파우치 본체
- 캡·마개·실링필름·라이너

- 라벨·슬리브·접착제·잉크의 해당량
- 묶음필름·트레이·칸막이
- 운송상자·테이프·완충재·팔레트 포장재

직접 측정이 어렵다면 포장 포함 총중량에서 내용물 순중량을 차감할 수 있지만 측정방법, 표본수, 측정일과 평균·허용오차를 기록해야 합니다.

3. 치수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일반적으로 길이 × 너비 × 높이를 mm 로 기록합니다. 원통형 포장은 직경 × 높이, 연포장은 펼친상태·충전상태 등 측정조건을 함께 적습니다.

- ☐ 치수 방향의 정의가 도면과 일치합니까?
- ☐ 빈 포장인지 충전·밀봉된 상태인지 표시했습니까?
- ☐ 파우치의 거식과 실링부 포함 여부를 정했습니까?
- ☐ 운송상자의 내부·외부 치수를 구분했습니까?
- ☐ 팔레트 포장이라면 적재상태와 전체 높이를 기록했습니까?

4. 권장 관리표 항목

- SKU 와 포장단계
- 포장유형 코드·바코드·내부 품번·도면번호
- 포장재질과 구성요소
- 포장재 순중량(g)
- 외형치수(mm)와 측정상태
- 공급업체·공급업체 품번
- 측정일·측정방법·표본수
- 적용 TD·DoC 번호와 버전

5. 자주 발생하는 오류

- 제품 내용물 무게를 포장재 중량으로 입력
- 날개 바코드를 운송상자 식별번호로 반복 사용
- 파우치와 상자의 치수단위를 혼용
- 빈 포장과 충전포장의 치수를 구분하지 않음

- 공급업체 이론중량과 실제 측정값의 차이를 기록하지 않음
- 포장 변경 후 TD의 중량·치수와 도면을 개정하지 않음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15 조 제 5 항: 형식·배치·일련번호 또는 식별요소
- 부속서 VII: 포장 일반설명·설계·도면·재료정보
- 부속서 VIII: 포장의 고유 식별과 추적 가능한 설명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년 8월 3일 게시분)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FAQ 11

포장재 공급업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나요? 제조사가 다시 시험해야 하나요?

2026 년 8 월 4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포장재 공급업체가 보유한 시험성적서와 적합확인서를 그대로 활용해도 되나요? 최종 제품 제조사가 모든 포장재를 다시 시험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PPWR 제 16 조는 포장 또는 포장재 공급업체가 제조자에게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조자가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거나 모든 구성요소를 반복 시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 15 조와 제 39 조의 최종 책임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제조자는 공급업체 자료의 진위·적용범위·최신성·시료대표성을 검토하고 실제 생산포장과 연결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공급업체 보완, 완성포장 시험 또는 위험기반 추가시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1. 활용 가능한 공급업체 자료

- 제품 사양서와 안전·물질정보
- 재질·원료등급·첨가제·색상 정보
- 도면, BOM, 층구조와 두께
- 4 대 중금속·PFAS 등 시험성적서
- PPWR 또는 특정 물질제한 적합확인서
- 식품접촉 포장 관련 DoC 와 이행시험 자료
- 잉크·접착제·코팅의 적용범위 확인서

2. 공급업체 자료의 필수 확인사항

- ☐ 문서 발행자와 실제 공급업체가 일치합니까?
- ☐ 제품명·품번·재질·등급이 구매품과 일치합니까?

- ☐ 적용 공장·생산라인·색상·두께 범위가 명확합니까?
- ☐ 시험방법·결과·검출한계와 판정기준이 확인됩니까?
- ☐ 문서의 유효기간 또는 개정상태가 확인됩니까?
- ☐ 실제 포장에 추가되는 인쇄·접착·코팅을 포함합니까?
- ☐ 자료의 적용대상 SKU와 포장단계를 기록했습니까?

3. 제조사가 다시 시험해야 하는 경우

- 자료에 제품명이나 품번이 없어 실제 구매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시험시료와 최종 포장의 재질·층구조·색상·공정이 다른 경우
- 원재료 결과만 있고 완성품에 추가되는 잉크·접착제 영향이 평가되지 않은 경우
- 규제기준보다 검출한계가 높거나 시험항목이 누락된 경우
- 공급업체 변경·원료 변경·공정 변경 후 영향평가가 없는 경우
- 서로 다른 공급업체 자료의 결론이 충돌하는 경우
- EU 고객이나 감독기관이 완성포장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4. 위험기반 검증방법

1. 구성요소별 규제위험과 식품접촉 여부를 분류합니다.
2. 공급업체 자료의 완전성과 신뢰도를 평가합니다.
3. 실제 포장과 자료의 차이를 기록합니다.
4. 차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낮으면 문서근거로 정당화합니다.
5. 영향이 불명확하거나 높으면 보완자료 또는 추가시험을 실시합니다.
6. 판단근거와 승인자를 TD에 기록합니다.

5. 공급업체 요청서에 넣을 항목

- 공급업체·제조공장·제품명·품번
- 재질·등급·색상·두께·사용용도
- 4대 중금속과 해당 시 PFAS 적합근거
- 시험성적서번호·시험기관·시료정보
- 식품접촉 관련 EU 문서
- 적용범위·제외사항·유효기간

- 원료·공정·사양 변경 시 사전통보 의무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15 조: 제조자의 최종 적합성 책임
- 제 16 조: 공급업체의 정보·문서 제공 의무
- 제 18 조: 수입자의 검증의무
- 부속서 VII: TD 와 시험성적서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분)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FAQ 15

공급업체가 도면과 배합정보를 영업비밀로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6 년 8 월 4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포장재 공급업체가 도면, 층구조나 잉크·접착제 배합을 영업비밀이라며 제공하지 않습니다. TD 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PPWR 제 16 조는 공급업체가 제조자에게 포장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종이 또는 전자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식품접촉 포장에 적용되는 EU 문서도 해당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원료배합 비율을 일반 유통망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비밀유지계약, 제한열람, 제 3 자 시험기관 직접제출, 요약사양서와 적합확인서 등으로 기술비밀과 규제증빙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최소한 확보해야 할 정보

- 공급업체와 제조공장, 제품명·품번
- 기본 재질, 층구조와 주요 규격
- 포장 내 적용위치와 사용조건
- 적용 가능한 PPWR 요구사항의 적합확인
- 중금속·PFAS 등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한 근거
- 식품접촉 관련 DoC 와 제한조건
- 문서 적용범위·유효기간·변경통보 조건

정확한 배합비 전체가 없어도 포장을 식별하고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재질·기능·제한물질·시험정보는 필요합니다.

2.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자료를 받는 방법

1. NDA 를 체결하고 자료의 사용목적·열람자·보관기간을 제한합니다.

2. 상세배합 대신 재질범위와 제한물질 적합성을 담은 제한공개 사양서를 받습니다.
3. 상세자료를 지정 시험기관·컨설턴트 또는 EU 수입자에게 직접 제출하게 합니다.
4. 제 3 자 시험성적서와 독립 적합확인서로 일부 정보를 대체합니다.
5. 영업비밀 별첨을 TD 본문과 분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합니다.
6. 감독기관 요청 시 제공할 담당자와 10 일 대응절차를 합의합니다.

3. 적절하지 않은 대응

- 제품명이나 품번 없이 'PPWR 적합' 한 줄만 받은 경우
- 어떤 기준과 시험방법을 적용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 공급업체 대표서명·발행일·적용범위가 없는 경우
- 실제 구매품과 연결되지 않는 일반 홍보자료만 있는 경우
- 영업비밀을 이유로 당국 요청에도 아무 자료를 낼 수 없는 구조

이 경우 제조자는 적합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보완요청, 대체 공급업체 검토 또는 독립시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공급업체 협의문에 넣을 내용

- ☐ 제 16 조에 따른 자료제공 목적을 설명했습니까?
- ☐ 필요자료와 허용 가능한 대체자료를 구분했습니까?
- ☐ 자료의 기밀등급과 열람자를 정했습니까?
- ☐ EU 수입자·당국 요청 시 제공방식을 정했습니까?
- ☐ 원료·공정·사양 변경의 사전통보를 약정했습니까?
- ☐ 자료 미제공 시 추가시험 또는 공급전환 기준을 정했습니까?

5. TD 에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TD 본문에는 공급업체·품번·재질·적용범위와 적합성 결론을 기록하고, 기밀자료는 별첨번호와 보관위치·접근권한으로 연결합니다. 자료 자체를 일반 배포본에 모두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요청 시 정해진 절차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의 제한 때문에 남는 불확실성은 위험평가에 기록하고 추가시험 또는 공급업체 보증으로 어떻게 통제했는지 설명합니다.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15 조 제 10 항: 당국 요청 시 10 일 내 정보·문서 제공
- 제 16 조: 공급업체의 정보·문서 제공 의무
- 제 39 조: 제조자의 최종 적합성 책임
- 부속서 VII: 설계·재료·위험평가와 시험자료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본)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FAQ 26

국내 KOLAS 또는 ISO/IEC 17025 시험기관의 성적서는 EU 에서 인정되나요?

2026 년 8 월 10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한국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중금속·불소·재질시험을 받으면 EU 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ISO/IEC 17025 로고가 있는 성적서라면 추가시험이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PPWR 의 적합성평가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의 내부생산관리 방식이며, 모든 시험을 EU 내 지정기관에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시험성적서도 기술문서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KOLAS 와 ILAC MRA 체계는 인정기관과 시험기관의 역량 및 결과의 국제적 수용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상호인정은 개별 규제기관이 특정 제품의 법적 적합성을 자동 확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인정범위 밖 시험이나 부적절한 방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적서의 기관명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료를 어떤 공인방법과 조건으로 시험했는가'입니다. 시험항목, 재질, 방법, 정량한계, 판정기준, 인정표시와 범위를 검토하고 TD 의 포장코드·공급업체·충구조와 연결해야 합니다.

1. KOLAS·ISO/IEC 17025 의 의미

- ISO/IEC 17025: 시험·교정기관의 역량, 공정성 및 일관된 운영에 관한 국제표준
- KOLAS: 국내 시험기관의 특정 시험범위를 인정하는 국가인정기구
- ILAC MRA: 서명 인정기구가 인정한 결과의 국제적 수용을 지원하는 상호인정체계
- 중요한 제한: 시험기관 전체가 아니라 인정서에 기재된 구체적 시험범위가 인정대상

2. 성적서 검토 체크리스트

- ☐ 시험기관의 KOLAS 인정상태와 유효기간을 공식 검색에서 확인
- ☐ 해당 재질·시험방법·분석항목이 인정범위에 포함
- ☐ 성적서에 인정마크와 인정번호가 있고 비인정 항목이 구분
- ☐ 시료명·색상·두께·충구조·공급업체·로트가 양산품과 일치

- ☐ 시험방법이 PPWR 또는 후속법령·공통규격 요구와 일치
- ☐ 검출한계·정량한계가 법정 기준보다 충분히 낮음
- ☐ 측정불확도와 판정규칙이 적합·부적합 결론에 적절히 반영

3. PPWR 에서의 사용방법

시험성적서는 적합성 입증자료의 한 부분입니다. 제조자는 시험결과와 함께 포장설계, 공급업체 선언, 재질규격, 위험평가와 양산일치성을 종합하여 적합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1. 적용조항과 필요한 분석대상·기준값을 먼저 확정합니다.
2. 시험기관에 포장재질·층구조·예상농도와 필요한 정량한계를 알립니다.
3. 시료채취와 봉인·로트 식별기록을 보관합니다.
4. 결과를 위험평가와 TD 에 연결하고 담당자가 검토·승인합니다.
5. 규정·방법·포장사양 변경 시 성적서의 계속 사용 가능성을 재평가합니다.

4. 추가시험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시험방법 또는 재질이 기관의 인정범위 밖인 경우
- 성적서 시료와 실제 포장의 공급업체·색상·코팅·인쇄가 다른 경우
- 향후 PPWR 시행법령이 새로운 표준방법을 지정한 경우
- 총불소 결과만으로 PFAS 개별·합계 기준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
- 거래처 또는 관할기관이 합리적인 사유로 재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5. 거래처에 설명할 때

‘EU 인증 완료’라고 표현하기보다 ‘KOLAS 가 ISO/IEC 17025 에 따라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인정범위 내 방법으로 시험했으며, 제조자가 해당 성적서를 PPWR TD 의 근거로 검토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적서와 함께 시험기관 인정서·인정범위 링크, 시료사양 매핑표, 영문번역본을 제공하면 EU 수입자의 검토가 쉬워집니다.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38 조 및 부속서 VII: 내부생산관리 적합성평가
- 제 15 조: 제조자의 적합성 입증과 양산 변경관리
- Regulation (EC) No 765/2008: EU 인정제도의 기본원칙

- ISO/IEC 17025 및 ILAC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본)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ILAC - 인정 시험기관과 MRA 안내

<https://ilac.org/ilac-mra-and-signatories/accredited-conformity-assessment-bodies/>

ILAC MRA 서명기관 검색

<https://ilac.org/signatory-search/>

EU 인정제도 Regulation (EC) No 765/2008

<https://eur-lex.europa.eu/eli/reg/2008/765/2021-07-16/eng>

FAQ 27

시험성적서에 유효기간이 없으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고 언제 재시험해야 하나요?

2026 년 8 월 10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시험성적서에 만료일이 없는데 몇 년마다 다시 시험해야 하나요? 일회용 포장 TD 를 5 년 보관한다면 성적서도 5 년 동안 유효하다고 보아도 되나요?

핵심 답변

PPWR 에는 모든 시험성적서가 발행 후 몇 년이면 만료된다는 공통규정이 없습니다. 일회용 포장 5 년, 재사용 포장 10 년의 기간은 TD 와 DoC 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며 시험결과와 기술적 유효성을 자동 보장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제조자는 양산 포장이 계속 적합하도록 절차를 운영하고, 포장설계·특성 및 적용 표준·기술규격의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서 발행일보다 '현재 포장과 시험시료가 여전히 같은가'가 핵심입니다.

재시험 주기는 기업이 위험기반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없고 공급망이 안정적인 저위험 항목은 정기 서류검토로 유지할 수 있지만, 유해물질·식품접촉·공급업체 변동이 큰 항목은 주기시험이나 로트시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재검토해야 하는 변경

- ☐ 재질 또는 원료등급·배합비 변경
- ☐ 공급업체·생산공장·재활용원료 출처 변경
- ☐ 층구조·두께·색상·코팅·잉크·접착제 변경
- ☐ 금형·공정·경화·세척·인쇄조건 변경
- ☐ 사용조건, 접촉식품, 온도·시간 또는 유통기한 변경
- ☐ 법정 제한값, 시험방법, 조화표준 또는 공통규격 변경
- ☐ 부적합·민원·공급업체 감사결과 등 새로운 위험정보 발생

2. 성적서 계속 사용 판단

1. 성적서의 시료정보를 현재 BOM·도면·공급업체 규격과 비교합니다.
2. 시험방법과 정량한계가 현재 법정기준에 여전히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3. 성적서 발행 후 변경·일탈·민원·부적합 이력을 검토합니다.
4. 공급업체가 동일성을 확인하고 변경통지를 이행했는지 확인합니다.
5. 계속 사용, 보완서류 확보 또는 재시험 결론과 승인자를 기록합니다.

3. 위험기반 재시험 주기 설정

- 고위험: 법정기준과 결과가 가깝거나 공급원 변동이 큰 재생원료·유해물질 항목
- 중위험: 정기 구매하나 공급업체 관리와 규격변경 가능성이 있는 인쇄·접착·코팅 부품
- 저위험: 사양과 공급망이 장기간 고정되고 결과가 기준에서 충분히 여유 있는 재질

기업은 항목별 주기를 정하고 공급업체 연례확인, 인증서 갱신, 감사, 샘플시험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매년' 또는 '한 번 시험하면 영구'라는 일괄원칙은 피하십시오.

4. 오래된 성적서를 사용할 때 보완자료

- ☐ 시험시료와 현재 포장의 사양 일치표
- ☐ 공급업체의 무변경 선언과 최근 규격서
- ☐ 최근 구매·입고·로트 추적기록
- ☐ 법령·시험방법 변경 검토표
- ☐ 내부 위험평가와 계속 사용 승인기록
- ☐ 다음 검토일 또는 재시험 예정일

5. TD·DoC 변경관리

시험성적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해도 그 근거와 검토일을 TD에 남겨야 합니다. 적용요구사항이나 포장 특성이 바뀌면 위험평가와 적합결론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DoC를 새 버전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구버전 성적서와 DoC를 삭제하기보다 적용기간·포장로트와 함께 보관하면 시장감시기관의 추적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15 조 제 3 항·제 4 항: 보관기간과 양산 변경관리

- 제 39 조 제 2 항: EU 적합성선언의 지속적 갱신
- 부속서 VII: 시험·계산·위험평가와 기술문서
- ISO/IEC 17025: 시험결과, 방법, 불확도와 시험기관 역량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본)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FAQ 28

식품접촉 적합성 자료와 PPWR 시험자료는 무엇이 다르며 둘 다 필요한가요?

2026 년 8 월 10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포장재 공급업체에게 식품접촉 적합성선언과 이행시험 성적서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PPWR TD·DoC 를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중금속·PFAS 등 별도 자료가 필요한가요?

핵심 답변

Regulation (EC) 1935/2004 는 식품접촉재료가 정상적 또는 예상 가능한 사용조건에서 식품으로 유해한 양의 물질을 이행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플라스틱에는 Regulation (EU) 10/2011 의 조성·특정이행·전체이행과 적합선언 요건이 추가됩니다.

PPWR 은 포장 전체의 환경·순환성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4 대 중금속 제한, 식품접촉 포장의 PFAS 제한, 재활용성, 플라스틱 재생원료, 최소화, 표시 등은 식품접촉 이행시험만으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험성적서나 공급업체 자료를 두 체계에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문서의 목적과 판정기준을 분리해야 합니다. 식품접촉 DoC 를 PPWR EU 적합성선언으로 이름만 바꾸거나 그 반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 두 규정의 핵심 차이

- 식품접촉 규정: 인체건강, 식품조성 변화와 맛·냄새 등 관능저하 방지
- PPWR: 포장 유해물질, 순환성, 재활용·재생원료, 감량·재사용과 표시
- 식품접촉 평가단위: 접촉재질, 식품유형, 온도·시간과 사용조건
- PPWR 평가단위: 포장 단위·유형·형식과 모든 구성품
- 선언서: 식품접촉 적합선언과 PPWR EU 적합성선언은 별도 법적 근거와 항목을 가짐

2. 식품접촉 자료의 예

- ☐ Regulation (EC) 1935/2004 적합 확인
- ☐ Regulation (EC) 2023/2006 GMP 관리자료

- ☐ 플라스틱 Regulation (EU) 10/2011 적합선언과 물질제한
- ☐ 전체이행·특정이행 시험과 식품모사용매·조건
- ☐ 인쇄면 전이, 접착제·코팅 등 비조화재질의 위험평가
- ☐ 재생플라스틱이면 Regulation (EU) 2022/1616 자료
- ☐ 활성·지능형 포장이면 Regulation (EC) 450/2009 자료

3. PPWR 자료의 예

- ☐ 포장 및 구성품의 4 대 중금속 합계 제한 증빙
- ☐ 식품접촉 포장의 PFAS 제한 증빙과 위험평가
- ☐ 재질·층구조·중량·치수·구성품 BOM
- ☐ 재활용성 및 재생원료 함량 평가자료
- ☐ 포장 최소화·빈공간·재사용 성능자료
- ☐ 표시·환경주장과 PPWR EU 적합성선언

4. 자료를 연결하는 방법

1. 포장코드와 식품접촉 부품을 BOM 에서 식별합니다.
2. 각 부품에 적용되는 식품접촉·PPWR 조항을 매핑합니다.
3. 한 자료가 어느 조항과 사용조건을 입증하는지 증빙목록에 표시합니다.
4. 자료가 없는 비접촉부품도 PPWR 구성품 평가에서 누락하지 않습니다.
5. 식품·포장·공정 변경 시 두 규정의 영향평가를 함께 실시합니다.

5. 흔한 오해

- 식품접촉 적합이면 PFAS 와 중금속도 자동 적합이라는 오해
- 식품과 닿지 않는 라벨·외포장은 아무 자료도 필요 없다는 오해
- PPWR DoC 한 장으로 플라스틱 식품접촉 적합선언을 대체할 수 있다는 오해
- 공급업체 선언서가 있으면 사용조건·이행시험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오해
- 재생원료 목표를 충족하면 식품접촉 재생플라스틱 요건도 자동 충족한다는 오해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5 조부터 제 12 조 및 부속서 VII·VIII

- Regulation (EC) 1935/2004 제 3 조·제 16 조: 식품접촉재료 안전과 적합선언
- Regulation (EC) 2023/2006: 식품접촉재료 GMP
- Regulation (EU) 10/2011 및 Regulation (EU) 2022/1616: 플라스틱·재생플라스틱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본)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식품접촉재료 Regulation (EC) 1935/2004

<https://eur-lex.europa.eu/eli/reg/2004/1935/oj/eng>

플라스틱 식품접촉재료 Regulation (EU) 10/2011

<https://eur-lex.europa.eu/eli/reg/2011/10/oj/eng>

식품접촉재료 GMP Regulation (EC) 2023/2006

<https://eur-lex.europa.eu/eli/reg/2006/2023/oj/eng>

식품접촉 재생플라스틱 Regulation (EU) 2022/1616

<https://eur-lex.europa.eu/eli/reg/2022/1616/oj/eng>

PART 5

판매국 EPR·포장 표시

판매 회원국별 EPR 등록책임과 포장 표시·재질표시·분리배출 정보·QR 코드 및 현지어 라벨 실무를 확인합니다.

FAQ 18 독일 LUCID 등 판매국별 EPR 등록은 TD·DoC와 별개인가요?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FAQ 23 PPWR 포장 표시·재질표시·분리배출 정보와 QR 코드는 언제부터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FAQ 24 기존 한글 포장 위에 독문·현지어 스티커 라벨을 추가 부착해도 되나요?

FAQ 18

독일 LUCID 등 판매국별 EPR 등록은 TD·DoC 와 별개인가요?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2026 년 8 월 10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독일 LUCID 등록번호나 프랑스 EPR 식별번호를 TD·DoC 에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한국 제조기업, EU 수입자, 현지 유통사, 온라인 판매자 중 누가 판매국별 EPR 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EPR 등록은 TD·DoC 와 원칙적으로 별개의 의무입니다. PPWR 제 15 조·제 38 조·제 39 조와 부속서 VII·VIII 는 제조자가 포장 적합성을 평가하고 TD 와 DoC 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반면 제 44 조·제 45 조는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회원국 영토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생산자(producer)'가 해당 회원국의 생산자 등록부에 등록하고 포장폐기물 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LUCID 번호나 프랑스 IDU 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TD·DoC 의 기술내용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속서 VII·VIII 의 필수항목에도 국가별 EPR 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EPR 등록 자체는 별도로 완료해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수입자·유통사가 등록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주체는 '한국에서 실제로 제품을 만든 회사'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포장이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원국, 해당 회원국에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최초로 공급하는 자,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지 여부, 자체상표 여부를 판매경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TD·DoC 와 EPR 등록의 차이

TD·DoC - 포장의 기술적 적합성

- 담당 역할: PPWR 상 제조자(manufacturer)
- 주요 목적: 제 5 조부터 제 12 조까지의 포장 지속가능성·표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입증
- 주요 자료: 포장 설명, 도면, 재질·층구조, 적용규격, 평가방법, 시험성적서, 위험평가, EU 적합성선언
- 보관: 일회용 포장 5 년, 재사용 포장 10 년

EPR 등록 - 판매국의 포장폐기물 책임

- 담당 역할: PPWR 상 생산자(producer)

- 주요 목적: 포장이 폐기되는 회원국에서 수거·선별·재활용 비용을 부담하고 시장 투입량을 보고
- 주요 절차: 국가 등록부 등록, 생산자책임기구 또는 회수시스템 계약, 재질별 중량 신고, 분담금 납부
- 국가별 예시: 독일 LUCID 등록, 프랑스 REP 체계의 고유식별번호(IDU)

제조자와 생산자는 같은 기업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이행 가이드는 제조자를 EU 전역에서 포장 적합성을 책임지는 역할로, 생산자를 포장이 폐기될 회원국에서 EPR 비용을 부담하는 역할로 구분합니다.

2. 누가 등록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4 단계

1. 포장이 최종적으로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원국을 확인합니다. 독일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독일에서 폐기될 포장이라면 독일 EPR 을 검토합니다.
2. 그 회원국의 공급망을 누가 처음 시작하는지 확인합니다. 현지 수입자·유통사가 한국산 포장제품을 받아 자국에서 처음 공급하면 그 현지 사업자가 생산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한국기업이 현지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지 확인합니다. 온라인몰·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직접판매도 최종사용자 소재 회원국에서 최초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자체상표·주문자상표, 포장종류, 계약상 역할을 함께 검토하고 생산자·등록번호·분담금 납부자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인코텀즈나 대금결제 조건 하나만으로 생산자를 확정하지 마십시오. 실제 공급망, 현지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주체, 최종사용자 직접판매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판매경로별 책임 예시

한국기업 → 독일 수입자·유통사 → 독일 고객

독일 수입자 또는 유통사가 독일 내 공급망을 처음 시작하면 그 독일 사업자가 EPR 생산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국기업은 자사 브랜드 포장의 제조자로서 TD·DoC 와 포장 재질·중량 자료를 제공하고, 독일 파트너의 LUCID 등록·시스템 참여 여부를 계약과 등록부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한국기업 → 독일 최종사용자 직접판매

한국기업이 자사몰 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독일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한국기업이 독일의 EPR 생산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독일 ZSVR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6 년 8 월 12 일부터 독일에 지점이 없는 해외기업은 권한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LUCID 등록 자체는 해외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개인적 의무로 안내됩니다.

독일 유통사의 자체상표 제품을 한국기업이 위탁생산

독일 유통사가 자기 이름 또는 상표로 제품을 설계·제조하게 한 경우에는 그 유통사가 PPWR 상 제조자이자 독일 EPR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위탁생산자는 포장 사양·시험·공급업체 자료를 제공하되, 책임 배분을 위탁생산 계약서에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풀필먼트 이용

마켓플레이스나 풀필먼트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EPR 책임이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PPWR 제 45 조는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의 국가별 등록정보와 자체확인을 받도록 하며, 서면 위임이 있는 경우 일부 비용부담 의무를 대신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매자는 플랫폼 입점 전 실제 등록 주체와 위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독일 LUCID 에서 확인할 사항

- ☐ 독일에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최초로 공급하는 생산자가 누구인지 결정했습니까?
- ☐ 생산자 명의로 LUCID 등록을 완료하고 관련 브랜드명을 정확히 등록했습니까?
- ☐ 시스템 참여 대상 판매·묶음·배송 포장이라면 회수시스템 운영자와 계약했습니까?
- ☐ 재질별 포장 중량을 시스템 운영자와 LUCID 에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까?
- ☐ 해외 직접판매 기업이라면 독일 권한대리인 선임과 LUCID 등록 절차를 확인했습니까?
- ☐ 온라인 플랫폼 또는 풀필먼트 사업자에게 제출할 등록번호와 증빙을 준비했습니까?

LUCID 등록은 무료이지만, 시스템 참여 대상 포장에 대한 회수·재활용 분담금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등록만 하고 시스템 계약이나 중량보고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완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5. 프랑스와 다른 회원국은 별도로 확인

독일 LUCID 등록번호는 독일에서의 의무를 위한 것이므로 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 등 다른 회원국의 등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PPWR 제 44 조는 생산자가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최초로 공급하는 각 회원국의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합니다.

프랑스 ADEME 는 REP 적용 생산자가 관련 품목군별 고유식별번호(IDU)를 보유하도록 안내합니다. 포장 외 다른 REP 품목에도 해당하는 제품은 품목군별로 여러 IDU 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지 생산자책임기구와 제품·포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매국별 등록부와 생산자책임기구 명칭
- 등록 주체와 현지 권한대리인 필요 여부
- 가정용·상업용·산업용 포장 구분
- 신고 주기, 재질분류, 최소 신고단위와 분담금
- 등록번호의 표시·거래처 제공·온라인 게시 요구

6. TD·DoC 와 EPR 자료를 연결하는 관리방법

EPR 번호를 TD·DoC 필수항목처럼 넣기보다는 별도의 '판매국별 EPR 관리대장'을 운영하고, 포장유형 코드로 TD 와 연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판매국·판매채널·고객유형(B2B/B2C)
- 제품 SKU·포장유형 코드·브랜드명
- 해당국 최초 공급자와 PPWR 상 생산자
- 국가 등록부·등록번호·등록일·상태
- 권한대리인·생산자책임기구·시스템 운영자
- 재질별 포장 중량·신고기간·신고량·분담금
- 근거계약·등록증·신고확인서·검증일
- 연결된 TD·DoC 번호와 버전

거래처가 EPR 번호를 요구하면 법정 필수항목인지 플랫폼·계약상 추가요건인지 구분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DoC 본문을 바꾸기보다 별도 EPR 확인서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7. 기업이 바로 확인할 질문

- ☐ 어느 회원국에서 포장이 폐기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 ☐ 그 회원국의 첫 현지 공급자는 누구입니까?
- ☐ 한국기업이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합니까?
- ☐ 자체상표 또는 주문자상표 제품입니까?
- ☐ 등록·분담금·중량신고 책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 상대방의 등록번호를 공식 공개등록부에서 확인했습니까?
- ☐ 포장 변경 시 TD 와 EPR 중량자료가 함께 개정됩니까?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3 조 제 1 항 제 13 호·제 15 호: 제조자와 생산자의 정의
- 제 15 조·제 38 조·제 39 조 및 부속서 VII·VIII: 제조자의 TD·DoC 와 적합성평가
- 제 44 조: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 등록 전 최초 공급 금지 및 보고
- 제 45 조: 확대생산자책임, 권한대리인, 온라인 플랫폼·폴필먼트 확인의무
- Commission Notice C/2026/3084 제 2·3 절: 제조자와 생산자의 구분 및 공급망별 판단

- 독일 ZSVR 공식 PPWR 안내: LUCID 등록·시스템 참여·중량보고와 해외기업 권한대리인
- 프랑스 ADEME REP 안내: 품목군별 고유식별번호(IDU)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분)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독일 ZSVR - PPWR 상 제조자와 생산자 구분

<https://www.verpackungsregister.org/en/ppwr/distinguishing-between-manufacturers-producers>

독일 ZSVR - LUCID 등록 안내

<https://www.verpackungsregister.org/en/registration/find-out-about-registrations>

독일 ZSVR - 해외기업 권한대리인 안내

<https://www.verpackungsregister.org/en/ppwr/bevollmaechtigung>

프랑스 ADEME - REP 고유식별번호(IDU) 안내

<https://filiere-rep.ademe.fr/identifiant-unique>

FAQ 23

PPWR 포장 표시·재질표시·분리배출 정보와 QR 코드는 언제부터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2026 년 8 월 10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재질표시와 분리배출 문구를 지금부터 포장에 넣어야 하나요? QR 코드가 의무인지, 국가별 재활용마크와 EPR 번호도 실물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일반 포장의 조화된 재질구성 라벨은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PPWR 제 12 조의 적용일과 향후 EU 시행법령에서 정할 그림문자·색상·기술규격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포장과 운송포장은 일부 라벨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전자상거래 포장은 예외에서 다시 제외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일반 포장의 분리배출 정보를 담은 QR 코드나 표준화된 디지털 데이터매체는 조화라벨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사용 포장은 재사용 가능성 표시와 함께 QR 코드 또는 다른 디지털 데이터매체로 재사용시스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벨은 눈에 잘 보이고 읽을 수 있으며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고, 회원국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오인하게 하는 재활용·재사용 표시나 비슷한 그림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주요 표시의 적용시점

- 재질구성 조화라벨: 2028 년 8 월 12 일 또는 관련 시행법령 발효 후 24 개월 중 더 늦은 날
- 재사용 포장 라벨·QR: 2029 년 2 월 12 일 또는 관련 시행법령 발효 후 30 개월 중 더 늦은 날
- 재생원료·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함량 표시: 원칙적으로 자발적이나 표시할 경우 조화된 규격과 산정방법 준수
- 보증금 반환시스템 포장: 별도의 조화된 라벨 적용 가능

2. QR 코드의 역할

일반 포장

조화된 재질라벨에 더하여 포장의 각 분리구성품이 어디로 배출되어야 하는지 QR 코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정라벨을 QR 코드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사용 포장

QR 코드 또는 다른 개방형 디지털 데이터매체로 재사용시스템의 이용가능성, 수거지점, 회전횟수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일 포장에 다른 EU 법령의 데이터매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데이터매체를 사용하되 정보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3. EPR 번호와 국가별 표시

PPWR 은 EPR 등록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는 디지털 데이터매체로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물 라벨 의무를 새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적용일 전 과도기와 보증금제도·제품법 등 다른 근거에 따른 표시가 있는지 판매국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EU 조화라벨이 적용되면 같은 목적의 국가별 분리배출 라벨은 단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집행위원회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환일과 국가행정 안내를 확인한 후 기존 표시를 변경하십시오.

4. 지금 준비할 표시 데이터

- ☐ 포장 단위와 분리가능 구성품별 재질코드
- ☐ 라벨·캡·용기 등 분리배출 방법
- ☐ 재사용 여부와 재사용시스템 운영정보
- ☐ 재생원료 표시를 할 경우 산정범위와 증빙
- ☐ 판매국 언어와 필수 제품표시를 포함한 라벨 공간
- ☐ QR 대상 URL 의 유지관리 책임자·변경이력·접근성

5. 적용 전 라벨 제작 주의사항

- EU 최종 도안이 아닌 자체 그림을 'PPWR 공식라벨'로 표시하지 않음
- 재활용 가능성과 실제 분리배출 방법을 혼동시키는 문구를 피함
- QR 링크가 만료되거나 국가에 따라 잘못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
- 라벨·스티커·잉크·접착제 자체가 재활용성을 저해하는지 함께 평가
- 시행법령 공표 후 인쇄판·포장재고 전환기간을 역산하여 변경계획 수립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12 조: 포장 라벨과 디지털 데이터매체
- 제 13 조: 수거용기의 조화된 분리배출 라벨
- 제 14 조: 포장 환경주장
- Commission Notice C/2026/3084 제 13 절: 표시제도의 조화와 국가별 표시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본)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FAQ 24

기존 한글 포장 위에 독문·현지어 스티커 라벨을 추가 부착해도 되나요?

2026 년 8 월 10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한국에서 인쇄한 한글 포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독일어 또는 판매국 언어 스티커를 덧붙여 수출해도 되나요? 스티커가 기존 표시를 일부 가리거나 나중에 부착되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PPWR 은 라벨이 눈에 잘 보이고, 읽을 수 있고, 포장에 견고하게 부착되며, 판매국이 정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스티커라는 형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판매상태에서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품의 필수정보는 눈에 띄는 위치에 명확히 읽히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다른 글이나 그림, 스티커 등에 의해 가려지거나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판매국은 하나 이상의 EU 공식언어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단순 영문표시만으로 충분한지 국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티커를 추가하면 라벨 재질, 접착제, 잉크와 면적이 포장 재활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종 라벨이 반영된 포장코드를 TD, 도면, 사진, BOM 및 시험·평가자료와 연결하십시오.

1. 스티커 사용이 가능한 기본조건

- ☐ 판매국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
- ☐ 제품명·원재료·알레르기·내용량·기한·사업자 등 필수정보를 정확히 반영
- ☐ 필수정보를 가리거나 읽기 어렵게 만들지 않음
- ☐ 운송·저장·냉장·습기 조건에서도 떨어지거나 번지지 않음
- ☐ 최소 글자크기, 대비, 동일 시야 등 제품법의 가독성 요건 충족
- ☐ 기존 한글표시와 현지어표시 사이의 번역·수치·단위가 일치

2. 식품 포장에서 특히 확인할 사항

Regulation (EU) 1169/2011 은 포장 또는 부착 라벨에 필수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수정보가 숨겨지거나 가려지지 않고 명확히 읽히도록 요구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강조, 영양정보, 날짜표시와 책임사업자 정보도 원문과 일치해야 합니다.

- 수입자 정보나 EU 내 식품정보 책임사업자 표시
- 현지 언어의 법정 식품명과 원재료 번역
-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강조방식
- 보관·사용조건과 날짜표시의 위치
-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사전 정보와 실물 라벨의 일치

3. 부착 위치와 시점

스티커는 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적법하게 부착되어야 합니다. 누가 어느 장소에서 부착하는지, 부착 전후 검수와 불량처리 책임을 한국 제조사·EU 수입자·유통사 계약서에 정하십시오.

- 바코드, 로트, 사용기한 또는 법정 경고문을 가리지 않음
- 곡면·접합부·개봉부에 걸쳐 들뜨지 않도록 위치 선정
- 변조방지 기능 또는 개봉표시를 훼손하지 않음
- 부착 후 사진과 승인된 라벨 버전을 로트기록에 보관

4. PPWR 기술문서에 반영할 내용

1. 스티커 재질·두께·중량·크기와 공급업체를 BOM 에 추가합니다.
2. 잉크와 접착제의 재질·화학물질 자료를 확보합니다.
3. 용기와 라벨의 분리·세척·선별 영향을 재활용성 평가에 반영합니다.
4. 승인된 언어별 라벨 파일, 개정번호와 적용 판매국을 관리합니다.
5. 라벨 변경이 적합성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고 TD·DoC 를 갱신합니다.

5. 피해야 할 사례

- 독일 판매제품에 한글·영문만 표시하고 독일어 필요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스티커로 원재료 또는 알레르기 필수정보 일부를 가림
- 수입자가 임의 번역한 라벨을 제조사 검토 없이 부착
- 서로 다른 SKU 에 동일 스티커를 사용하여 내용량·성분이 불일치

- 라벨 변경 후에도 구형 포장 사진과 BOM 을 TD 에 유지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12 조 제 5 항·제 8 항: 라벨 가독성·견고한 부착과 오인방지
- Regulation (EU) 1169/2011 제 12 조·제 13 조·제 15 조: 식품 필수정보의 배치·가독성·언어
- Regulation (EC) 2023/2006: 식품접촉재료의 GMP 와 인쇄 잉크 관리
- 부속서 II·VII: 라벨·접착제의 재활용성 영향과 기술문서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분)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EU 식품정보 Regulation (EU) 1169/2011

<https://eur-lex.europa.eu/eli/reg/2011/1169/oj/eng>

식품접촉재료 GMP Regulation (EC) 2023/2006

<https://eur-lex.europa.eu/eli/reg/2006/2023/oj/eng>

PART 6

중장기 설계요건·전환관리

2030 년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재활용성·재생원료·포장 최소화 요건과 적용일 전후 재고의 전환관리를 준비합니다.

FAQ 19 2030 년 이후 적용되는 재활용등급·재생원료·빈공간 항목을 지금 TD·DoC 에 작성해야 하나요?

FAQ 20 포장재 재활용성 등급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FAQ 21 플라스틱 포장의 재생원료 함량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증빙을 확보해야 하나요?

FAQ 22 포장 최소화와 빈공간 비율 기준은 어떤 포장에 적용되고 어떻게 측정하나요?

FAQ 29 EU 적용일 전에 제조·선적했거나 운송 중인 포장제품은 계속 판매할 수 있나요?

FAQ 19

2030 년 이후 적용되는 재활용등급·재생원료·빈공간 항목을 지금 TD·DoC 에 작성해야 하나요?

2026 년 8 월 10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거래처가 TD·DoC 양식에 재활용성 A~C 등급, 재생원료 함량, 빈공간 비율을 모두 적어 달라고 합니다.
대부분 2030 년 이후 의무인데 지금 수치나 등급을 확정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현재 확인할 수 없는 미래의 법정 평가결과를 추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PPWR 의 재활용 설계등급은 2030 년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최소비율과 포장 최소화·빈공간 제한도 원칙적으로 2030 년부터 적용되며, 세부 평가·산정방법은 후속 위임법령 또는 시행법령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 자료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포장의 재질, 층구조, 중량, 라벨·접착제·잉크, 재생원료 사용량, 포장과 내용물의 부피를 기초자료로 확보하고, 자체 예비평가 결과와 데이터 공백을 TD 부속자료 또는 규제대응 관리표에 기록하십시오.

최종 서명하는 PPWR DoC 에는 제 5 조부터 제 12 조까지 적용되는 요구사항의 적합성이 입증된 내용만 선언해야 합니다. 재활용성·재생원료 같은 미래 항목은 '현재 법정 적용 전', '최종 방법론 공표 후 재평가 예정'으로 관리하십시오. 제 24 조 빈공간 의무는 법정 DoC 의 선언범위와 구분하여 별도 준수기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1. 항목별 적용시점과 현재 준비수준

- 재활용 설계등급: 2030 년 1 월 1 일 또는 관련 위임법령 발효 후 24 개월 중 더 늦은 날부터 A·B·C 등급 포장만 시장 출시 가능
- 대규모 재활용성: 2035 년 1 월 1 일 또는 관련 시행법령 발효 후 5 년 중 더 늦은 날부터 추가 적용
- 플라스틱 재생원료 최소비율: 2030 년 1 월 1 일 또는 산정방법 시행법령 발효 후 3 년 중 더 늦은 날부터 적용
- 포장 최소화와 빈공간 50% 제한: 원칙적으로 2030 년부터 적용하되 세부 산정방법의 발효일에 따라 늦춰질 수 있음

각 항목은 적용시점과 후속법령의 진행상태가 다릅니다. 한 칸에 모두 '적합'이라고 묶지 말고 항목별 적용일, 근거조항, 현재 상태와 재검토일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2. 지금 TD 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

- ☐ 포장 단위별 재질·층구조·중량·치수와 구성품 목록
- ☐ 라벨, 슬리브, 캡, 접착제, 잉크, 코팅 및 내용물 잔류 가능성
- ☐ 재생원료 종류, 공급업체, 투입량, 제조공장·연도 및 증빙 상태
- ☐ 판매포장·묶음포장·운송포장·전자상거래 포장의 외부부피와 내용물 또는 판매포장 부피
- ☐ 사용한 민간 가이드나 예비평가 방법의 명칭·버전·평가일
- ☐ 미확정 데이터, 담당자, 공급업체 요청일, 목표 완료일 및 법령 재검토일

민간 설계가이드로 산출한 결과는 '예비평가'임을 표시하십시오. 향후 EU 가 채택할 법정 기준에 따른 최종등급과 동일하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3. 문서에 권장하는 표현 예시

TD 또는 규제대응 관리표

'PPWR 제 6 조 재활용 설계등급: 법정 평가기준 적용 전. 현재 재질구성과 구성품 자료를 기준으로 예비검토 완료. 최종 위임법령 공표 후 재평가하며 적용일 전 TD·DoC 를 개정한다.'

최종 DoC

아직 적용되지 않는 미래 항목을 별도 표에 넣는 경우 '현재 적용대상 아님(Not yet applicable)'과 근거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필수항목이 미확인 상태라면 최종 DoC 를 발행하지 말고 증빙을 먼저 보완해야 합니다. 빈공간 비율처럼 제 24 조에 따른 운영의무는 PPWR DoC 본문보다 별도 준수기록·계산서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피해야 할 작성 방식

- 시험이나 평가 없이 재활용성 A 등급이라고 확정
- 공급업체의 '친환경' 문구만으로 재생원료 함량을 법정 수치로 인정
- 내부 계산값을 향후 EU 공식 빈공간 비율이라고 표시
- 적용 전 항목을 공란으로 두고 사유·담당자·재검토일을 남기지 않음
- 한 번 발행한 DoC 를 2030 년 이후에도 갱신 없이 계속 사용

5. 적용일 전 갱신 절차

1. EU 위임법령·시행법령의 공표와 발효일을 분기별로 확인합니다.
2. 최종 방법론에 따라 포장 형식별 평가·계산을 다시 수행합니다.
3. 필요한 시험, 공급업체 선언, 질량수지 또는 부피측정 자료를 보완합니다.
4. 변경된 평가결과를 위험평가와 TD 에 반영하고 내부 승인기록을 남깁니다.
5. 적합성이 입증된 후 DoC 를 새 버전으로 발행하고 구버전을 보관합니다.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6 조 및 부속서 II: 재활용성 평가·등급과 적용시점
- 제 7 조: 플라스틱 포장의 재생원료 최소비율과 산정방법
- 제 10 조·제 24 조 및 부속서 IV: 포장 최소화와 빈공간 비율
- 제 15 조·제 39 조 및 부속서 VII·VIII: 변경관리, TD 및 EU 적합성선언 갱신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본)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FAQ 20

포장재 재활용성 등급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2026 년 8 월 10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재활용성 A·B·C 등급은 시험기관이 인증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조자가 직접 평가하나요? 복합재 파우치나 라벨·캡이 있는 용기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PPWR 은 제조자가 포장의 재활용성을 평가하고 그 근거를 TD 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모든 포장에 일률적으로 제 3 자 인증서를 요구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제조자는 적용기준·시험·계산·공급업체 자료를 통해 평가결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속서 II 의 기본 등급은 포장 단위 중 설계상 재활용 가능한 비율을 기준으로 A 95% 이상, B 80% 이상, C 70% 이상입니다. 70% 미만은 기술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2035 년부터는 실제로 대규모 수거·선별·재활용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추가됩니다.

세부 설계기준은 포장 종류별로 달라지고 2028 년까지 위임법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자체평가는 설계개선과 데이터 공백 파악에 활용하고, 법정등급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등급의 의미와 출시 제한

- A 등급: 포장 단위 중 재활용 가능한 비율 95% 이상
- B 등급: 80% 이상 95% 미만
- C 등급: 70% 이상 80% 미만
- 70% 미만: 기술적으로 재활용 불가능
- 2030 년부터 A·B·C 등급, 2038 년부터 A·B 등급만 출시 가능하도록 단계 강화

비율은 단순히 주재질의 중량만 보는 값이 아닙니다. 실제 선별·재활용 공정에서 라벨, 접착제, 코팅, 잉크, 잔류내용물 등이 재활용을 방해하는지도 포장 형식별 기준에 따라 반영됩니다.

2. 평가할 주요 설계요소

- ☐ 주재질과 모든 층의 재질·두께·중량
- ☐ 첨가제, 충전제, 색상 및 검출·선별 가능성
- ☐ 라벨·슬리브의 재질, 면적, 밀도와 분리 가능성
- ☐ 캡·마개·밸브·소형부품의 재질과 잔류 여부
- ☐ 접착제의 종류, 도포량, 세척·박리 특성
- ☐ 차단층·코팅·금속증착·잉크·바니시·인쇄코드
- ☐ 내용물 잔류량, 배출·세척 용이성 및 소비자 분리 가능성

3. 책임주체와 외부기관 활용

제조자는 최종 등급과 적합성에 책임을 집니다. 시험기관, 재활용설계 컨설턴트 또는 산업협회의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지만, 외부 보고서가 포장의 최신 사양과 정확히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제조자가 최종 판단을 승인해야 합니다.

- 시험 시료의 제품코드·포장코드·색상·층구조가 양산품과 일치하는지 확인
- 적용한 시험방법·설계가이드·버전과 평가범위를 기록
- 평가에서 제외한 구성품과 제외사유를 명시
- 제 3 자 결과와 제조자의 최종 적합성 판단을 구분

4. TD 에 포함할 평가패키지

1. 포장 형식 식별정보와 전체 구성품 목록을 작성합니다.
2. 도면·단면도·BOM 과 구성품별 중량표를 연결합니다.
3. 적용되는 재활용 설계기준과 제외·예외사항을 확인합니다.
4. 계산서, 시험성적서, 공급업체 선언과 사진을 첨부합니다.
5. 등급 산정결과, 가정, 불확도와 위험평가를 기록합니다.
6. 평가자·승인자·평가일·재검토일과 변경이력을 남깁니다.

5. 지금 할 수 있는 예비평가

최종 EU 기준이 나오기 전에는 유럽 포장재 산업가이드나 공급업체 설계자료를 이용해 병목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층재질 단순화, 대면적 슬리브 축소, 분리되지 않는 이중재질 부품 변경, 접착제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비평가 결과에는 '법정 최종등급 아님'이라는 문구와 사용한 기준의 버전을 표시하고, 2028 년 위임법령 공표 후 반드시 재평가하십시오.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6 조: 모든 포장의 재활용 가능성 및 제조자의 평가
- 부속서 II 표 3·4: A·B·C 등급과 재활용 설계 평가요소
- 부속서 VII: 제조자의 내부생산관리와 기술문서
- Commission Notice C/2026/3084 제 6 절: 재활용성 요구사항 적용일 안내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본)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FAQ 21

플라스틱 포장의 재생원료 함량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증빙을 확보해야 하나요?

2026 년 8 월 10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재생 PET 또는 재생 PE 를 사용한다면 함량은 포장 한 개마다 계산해야 하나요? 공급업체 확인서만 있으면 되는지, 어떤 구매·생산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2030 년 목표는 포장 종류에 따라 10~35%로 다르며, 2040 년에는 25~65%로 강화됩니다. 적용대상과 비율은 식품접촉 등 민감용도, PET 여부, 음료병 여부 및 기타 플라스틱 포장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산정은 개별 포장 한 개의 실측값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PPWR 은 포장 유형과 형식별로 제조공장 및 연도 단위의 평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별 구매량·투입량·생산량·재고변동과 해당 포장에 배분된 재생원료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업체의 단순 영업확인서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료규격, 소비 후 재생원료 여부, 원산지·재활용과정, 질량수지 또는 분리관리, 로트·송장·투입기록과 변경통지를 함께 확보하고 향후 EU 산정방법에 맞춰 검증해야 합니다.

1. 2030 년과 2040 년 최소비율

- PET 로 만든 접촉민감성 포장(일회용 음료병 제외): 2030 년 30%, 2040 년 50%
- PET 이외 플라스틱 접촉민감성 포장(특정 예외 제외): 2030 년 10%, 2040 년 25%
-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2030 년 30%, 2040 년 65%
- 기타 플라스틱 포장: 2030 년 35%, 2040 년 65%

의료·의약품·퇴비화 포장, 위험물 운송포장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장 용도와 예외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목표비율을 적용하십시오.

2. 계산의 기본구조

기본적으로 해당 공장·연도에 특정 포장 유형과 형식 생산에 사용된 소비 후 재생 플라스틱의 질량을 그 포장에 사용된 전체 플라스틱 질량과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손실률, 재고, 혼합·질량수지 처리방법은 제 7 조 제 8 항의 시행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 계산단위: 포장 유형·형식별
- 평균단위: 제조공장별·연도별
- 대상원료: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생원료
- 해외 재생원료: EU 와 동등한 수거·재활용 조건 및 환경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3. 공급업체에서 받을 자료

- ☐ 원료명·등급·제품코드와 재질 규격서
- ☐ 소비 후 재생원료(PCR) 함량 및 계산기준
- ☐ 재생원료 공급자·재활용시설·생산국과 공정 설명
- ☐ 로트번호, 생산일, 납품량, 송장 및 납품서 연결정보
- ☐ 분리관리 또는 질량수지 관리방법과 제 3 자 인증 범위
- ☐ 식품접촉 용도인 경우 Regulation (EU) 2022/1616 등 해당 적합자료
- ☐ 원료·공정·공급처 변경 시 사전 통지 약정

4. 제조사가 보관할 내부기록

- 공장별 원료 입고·재고·투입·폐기·반품 내역
- 생산오더·배치·포장코드별 생산량과 원료 배합비
- 신재와 재생원료의 구분 또는 승인된 질량수지 계산서
- 연간 평균 산정표, 검토·승인 기록 및 불일치 조정내역
- TD 의 포장사양, 공급업체 문서와 계산표의 버전 연결

라벨에 재생원료 함량을 표시하거나 환경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산정범위가 포장 전체인지 특정 부품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TD 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시행법령 공표 전 주의사항

제 7 조 제 8 항의 최종 산정·검증방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현재 인증이나 질량수지 방식을 향후 PPWR 에서 자동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계약서에는 ‘최종 EU 방법론에 맞춘 추가자료 제공과 재검증’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수치의 분모·분자와 적용 포장범위를 문서에 표시했습니까?
- ☐ PCR 과 공정스크랩 등 소비 전 재생원료를 구분했습니까?
- ☐ 공장·연도별 기록과 구매증빙이 일치합니까?
- ☐ 식품접촉 재생플라스틱의 별도 안전요건도 확인했습니까?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7 조: 플라스틱 포장의 최소 재생원료 함량
- 제 12 조 제 4 항: 재생원료 함량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의 요건
- Commission Regulation (EU) 2022/1616: 식품접촉 재생플라스틱
- 부속서 VII: 산정과 적합성 입증자료의 기술문서화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분)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식품접촉 재생플라스틱 Regulation (EU) 2022/1616

<https://eur-lex.europa.eu/eli/reg/2022/1616/oj/eng>

FAQ 22

포장 최소화와 빈공간 비율 기준은 어떤 포장에 적용되고 어떻게 측정하나요?

2026 년 8 월 10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제품 보호를 위해 완충재와 머리공간이 필요한데 모두 빈공간으로 보나요? 판매포장과 택배상자 중 어느 포장에 50% 기준이 적용되며 지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제 10 조의 포장 최소화 의무는 포장 유형 전반에 적용됩니다.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품 보호, 제조공정, 물류, 기능, 정보표시, 위생·안전, 법적 요구,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하면서 중량과 부피를 필요한 최소수준으로 줄였음을 TD 로 입증해야 합니다.

제 24 조의 50% 빈공간 상한은 최종 유통업자 또는 최종사용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묶음포장·운송포장·전자상거래 포장에 적용됩니다. 종이조각, 에어쿠션, 버블랩, 스펀지 등 충전재가 차지하는 공간도 빈공간에 포함됩니다.

세부 계산방법은 2028 년 2 월 12 일까지 시행법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지금 계산한 값은 내부 예비값으로 표시하고 외부치수, 내부사용가능부피, 판매포장 부피와 측정조건을 함께 기록하십시오.

1. 포장 유형별 적용

- 판매포장: 제 10 조 최소화 적용. 2028 년 2 월 12 일까지 빈공간을 필요한 최소수준으로 축소
- 묶음포장: 제 10 조 최소화와 제 24 조 50% 상한 적용
- 운송포장: 제 10 조 최소화와 제 24 조 50% 상한 적용
- 전자상거래 포장: 제 10 조 최소화와 제 24 조 50% 상한 적용
- 재사용 포장 또는 판매포장을 그대로 전자상거래 포장으로 쓰는 일부 경우: 50% 상한 예외 가능하나 제 10 조 최소화는 계속 적용

2. 빈공간의 기본 계산개념

법문상 빈공간은 외부 포장 전체 부피에서 그 안의 판매포장이 차지하는 부피를 제외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최종 산식과 측정조건은 시행법령을 따라야 하지만, 내부 예비계산은 다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외부 포장의 내부 사용가능부피 또는 법정 방법에서 정한 기준부피를 측정합니다.
2. 안에 들어간 판매포장의 부피를 같은 단위와 측정원칙으로 합산합니다.
3. 외부 포장 부피에서 판매포장 부피를 뺀 값을 빈공간으로 봅니다.
4. 빈공간을 외부 포장 부피로 나누어 비율을 계산하고 측정조건을 기록합니다.

제품 사이의 공간과 충전재가 차지하는 공간도 원칙적으로 빈공간입니다. 완충재의 재질이 종이 또는 재활용재라는 이유로 계산에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3. 판매포장의 머리공간

액체·분말·스낵 등은 충전공정, 침전, 발효, 보호가스 또는 내용물 특성 때문에 머리공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공간은 없애야 할 과대포장과 구분하여, 품질·안전·공정자료로 정당화해야 합니다.

- ☐ 내용물의 충전량·밀도·침전 또는 팽창 특성
- ☐ 보호가스 사용량과 산소·수분 차단 요구
- ☐ 낙하·진동·압축·누액 시험결과
- ☐ 충전설비 허용오차와 밀봉공정 한계
- ☐ 더 작은 포장으로 줄이지 못한 이유와 대안평가

4. TD 에 남길 최소화 근거

- 현재 포장 중량·부피와 기준일
- 부속서 IV 의 성능기준별 필요조건
- 감량·소형화 대안과 시험·모델링 결과
- 추가 감량 시 제품손상·식품폐기·안전위험이 증가하는 근거
- 선택한 설계의 승인자, 재검토일과 개선계획

마케팅 목적의 이중벽, 가짜 바닥, 불필요한 층 등 제품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하는 설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이나 지리적 표시 등 좁은 예외가 있는 경우에도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5. 실무 개선순서

1. SKU 별 판매·묶음·운송·전자상거래 포장을 구분합니다.

2. 상자 규격, 적재수량, 완충재와 빈공간 예비비율을 측정합니다.
3. 상자 규격 세분화, 접이식 완충, 제품 배열과 팔레트 적재를 개선합니다.
4. 변경 전후 제품보호와 물류효율을 시험합니다.
5. 최종 시행법령이 나오면 계산을 다시 수행하고 TD 를 갱신합니다.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제 10 조 및 부속서 IV: 포장 최소화 평가
- 제 24 조: 묶음·운송·전자상거래 포장의 빈공간 비율
- 제 3 조: 빈공간 비율과 포장 유형의 정의
- 부속서 V: 제한되는 특정 과대포장 형식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본)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FAQ 29

EU 적용일 전에 제조·선적했거나 운송 중인 포장제품은 계속 판매할 수 있나요?

2026 년 8 월 10 일 기준 | Regulation (EU) 2025/4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행 가이드·최신 FAQ 반영

질문

2026 년 8 월 12 일 전에 한국에서 생산하고 선적했지만 그 이후 EU 에 도착하는 제품은 구규정 재고로 판매할 수 있나요? EU 창고에 있으면 모두 이미 시장 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핵심 답변

PPWR 에서 시장 출시(placing on the market)는 EU 시장에서 포장 또는 포장제품이 최초로 공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적용일 전에 시장 출시되어 유통사·소매사·도매사 재고가 된 포장은 후속 지속가능성·표시 요구 때문에 회수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조일, 포장일, 선적일, 선하증권 발행일 또는 EU 도착일 하나만으로 시장 출시 여부를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EU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유통·소비·사용을 위해 최초로 공급했는지, 거래와 물품의 식별이 개별 로트에 연결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6 년 8 월 12 일부터 적용되는 식품접촉 포장의 PFAS 제한은 별도의 재고소진 전환기간이 없습니다. 그 날 이후 처음 시장 출시되는 포장은 이전에 생산되었더라도 제한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전에 이미 출시된 포장은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1. 날짜별 의미를 구분

- 제조일·포장일: 제품과 포장이 만들어진 시점
- 선적일: 운송이 시작된 시점으로 시장 출시와 반드시 같지 않음
- 수입·통관일: 중요한 증빙이지만 공급계약·소유권·물품상태와 함께 검토
- 시장 출시일: EU 시장에서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최초 공급한 시점
- 시장 제공일: 최초 출시 후 유통사가 다시 공급하는 시점

2. 상황별 판단 예시

적용일 전 EU 수입자에게 개별 로트가 공급되고 재고로 보관

실제 최초 공급과 로트 식별이 입증되면 기존 재고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매 유통은 최초 출시 후의 시장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용일 전 한국에서 선적했으나 이후 EU 수입자가 처음 공급

선적만으로 EU 시장 출시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적용일 이후 최초 공급되는 포장은 새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U 물류창고에 있으나 소유·공급관계가 불명확

창고의 위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수입자, 계약, 통관, 인수와 판매가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로트별로 보관할 증빙

- ☐ 구매주문서·공급계약과 인코텀즈
- ☐ 상업송장·포장명세서·선하증권
- ☐ 수입신고·통관·창고입고·인수 기록
- ☐ 로트번호·생산일·수량과 포장사양
- ☐ 소유권·위험이전과 최초 공급을 보여주는 거래기록
- ☐ 적용일 현재 재고목록과 이후 출고이력
- ☐ EU 수입자 또는 법률검토자의 판단·승인 기록

4. 표시요건의 별도 전환규칙

제 12 조의 특정 라벨 요구에는 해당 표시의 발효 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포장을 최대 3 년 동안 시장 제공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PPWR 요구사항에 공통 적용되는 3 년 재고소진기간이 아닙니다.

PFAS, 재활용성, 재생원료 등 각 요구사항마다 적용일과 전환문구가 다르므로 'PPWR 재고 3 년'처럼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5. 기업의 전환관리 절차

1. 요구사항별 적용일과 재고전환 조항을 구분합니다.
2. 포장코드·로트별 예상 최초 EU 공급일을 계산합니다.
3. 적용일 이후 출시 가능성이 있는 물량은 신기준으로 시험·전환합니다.
4. 기존재고와 신기준 재고를 ERP·창고에서 분리 식별합니다.
5. 불명확한 운송 중 물량은 EU 수입자와 서면으로 판단근거를 확정합니다.

관련 규정 및 공식 가이드

- Regulation (EU) 2025/40 전문 제 14 항 및 제 3 조: 시장 출시·시장 제공의 정의와 기존재고
- 제 5 조: 식품접촉 포장의 PFAS 제한
- 제 12 조 제 12 항: 특정 표시요건의 전환규칙
- Commission Notice C/2026/3084 제 5 절: PFAS 제한과 재고소진

공식 자료 바로가기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2026 년 8 월 3 일 게시본)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공통 공식 근거

본 자료집의 각 FAQ는 아래 PPWR 원문과 EU 집행위원회 공식 안내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링크의 게시 위치나 파일명은 EU 기관의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gulation (EU) 2025/40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EU 집행위원회 PPWR FAQ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Commission Notice C/2026/3084 - PPWR 이행 가이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6XC03084>

최종 확인

규정 적용 여부와 준수책임은 실제 수출포장·거래구조·판매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이 자료집 앞부분의 '법적 책임에 관한 중요 유의사항'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문의 안내

※ 기타 EU PPWR 대응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전남광주 수출기업은 아래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 EU PPWR 대응지원센터(전남광주유럽사무소)

이메일 info@j-europe.eu

2026 년 8 월 11 일 기준